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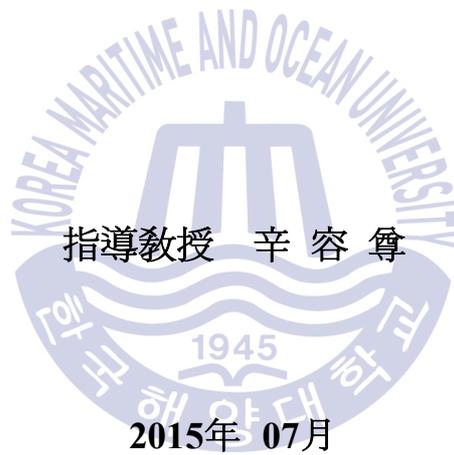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Free Trade Zone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關稅學科

咸 吉 先

본 논문을 함길선의 무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정함

위원장 오 용 식 (인)

위원 김 율 성 (인)

위원 신 용 존 (인)



2015년 6월 24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v
그림 목차 .....	vi
ABSTRACT .....	vii
<b>제1장 서 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b>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및 운영</b> .....	<b>6</b>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요 .....	6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	6
2. 자유무역지역의 법률상 정의 .....	8
3. 자유무역 관련 제도 .....	10
제2절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	14
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 .....	14
2.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연구 .....	16
제3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	18
1.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18
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	21
3.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출입 절차 .....	23
4.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	29
5. 자유무역지역 입주요인과 애로사항 .....	31
6. 자유무역지역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	33

<b>제3장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유사제도</b> .....	<b>36</b>
제1절 경제자유구역 .....	36
1. 경제자유구역의 개요 .....	3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 .....	37
3. 경제자유구역의 입주혜택 .....	40
4.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성과 .....	41
5.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	42
6.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	45
제2절 외국인투자지역 .....	46
1. 외국인투자지역의 개요 .....	46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 .....	48
3. 외국인투자지역의 혜택 .....	49
4. 외국인투자지역의 운영성과 .....	51
5. 외국인투자지역의 문제점 .....	52
6.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비교 .....	53
제3절 종합보세구역 .....	55
1. 종합보세구역의 개요 .....	55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현황 .....	57
3. 종합보세구역의 혜택 .....	59
4.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 .....	60
5.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	61
<b>제4장 외국의 유사 경제특구제도</b> .....	<b>63</b>
제1절 중국의 자유무역제도 .....	63
1. 보세구제도 .....	64
2. 수출가공구와 보세물류원구제도 .....	66
3. 보세항구와 종합보세구 .....	67
4. 상하이 경제자유무역구 .....	68

5.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와와의 비교 .....	69
제2절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 .....	70
1. 개요 .....	70
2. 지정 및 운영현황 .....	71
3. 특징 및 주요 혜택 .....	72
4.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와와의 비교 .....	73
제3절 대만의 수출가공구 .....	74
1. 개요 .....	74
2. 수출가공구 발전현황 .....	74
3. 지정 및 관리운영체계 .....	76
4. 주요 혜택 .....	76
5.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와와의 비교 .....	77
제4절 홍콩의 자유무역지역 .....	78
1. 자유항 도입배경 .....	78
2. 홍콩 자유항의 특징 .....	78
3. 홍콩 자유항의 주요 혜택 .....	79
4.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와와의 비교 .....	80
<b>제5장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b>	<b>81</b>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	81
1.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	81
2. 관리·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84
3.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	85
제2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선 방안 .....	89
1.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89
2. 관리·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95
3.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97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6
제1절 연구의 요약 .....	10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109
□ 참고문헌 .....	110



## 표 목차

<표 1> 각 국의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	7
<표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	19
<표 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현황('14.6월말기준) .....	20
<표 4>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현황('14.6월말 기준) .....	21
<표 5> 외투업체 임대료 면제 조건 .....	30
<표 6>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경과 .....	37
<표 7>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	39
<표 8>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혜택 .....	40
<표 9>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주변국가 경제특구 비교 .....	43
<표 10>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	45
<표 11>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비교 .....	47
<표 1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	48
<표 13> 외국기업 공장 가동현황 .....	51
<표 14>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비교 .....	54
<표 15>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	57
<표 16>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	58
<표 17>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	59
<표 18>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	62

<표 19> 중국 보세구역 기능 비교표 .....	67
<표 20>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관리운영체계 .....	71
<표 21>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우대혜택 .....	72
<표 22> 수출가공구 지정 및 운영기관 .....	76
<표 23>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	104

## 그림 목차

<그림 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	6
<그림 2> 자유무역지역 변천도 .....	9
<그림 3>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 .....	18
<그림 4> 외국물품 반입절차 흐름도 .....	23
<그림 5> 외국물품 반출절차 흐름도 .....	24
<그림 6> 내국물품 반입 흐름도 .....	25
<그림 7> 내국물품 반출 흐름도 .....	27
<그림 8>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신고 총괄표 .....	28
<그림 9> 자유무역지역 입주요인 .....	31
<그림 10> 자유무역지역 애로요인 .....	32
<그림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흐름도 .....	49
<그림 12> 종합보세구역 지정절차 .....	57
<그림 13> 대만 수출가공구의 발전과정 .....	75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Free Trade Zone

Ham, Gil-Se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stom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Trade barriers have rapidly been lowered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proliferation of regional economic blocs. Economic competition has intensified among countries and among corporations as well with the economic borders easier to cross than ever before.

This study has made the countries to push forward the strategy of rai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setting up global economic hubs wher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integrated in certain domestic terrain.

In other words, they put in great efforts of preparing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tailor-made for their specific economic situation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Korea, Special Economic Zones are in plac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ich are Free Trade Zone, Free Economic Zone and Foreign Investment Zone. As of April 2015, 13 Free Trade Zones, eight Free Economic Zones and 86 Foreign Investment Zones are in operation.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ystem of the Free Trade Zone was introduced and operated in full scale and Korean government has exerted significant effort to promote the system. However, many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has not borne much fruit in promoting foreign trade and job creation and that more effort is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flaws of the system and propose a improvement plan by way of carrying out analysis of the Free Trade Zone system and its comparison to other similar systems in Korea such as Free Economic Zone, Foreign Investment Zone and Total Bonded Area and to the Free Trade Zone system in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Taiwan and Singapore.

Key Words : Free Trade Zone, Free Economic Z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 제 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WTO 체제하에서 세계 교역자유화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기업 간 경쟁이 글로벌화되면서 기업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생존경쟁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국제무역 및 경영환경에서 상품과 서비스무역 등의 자유화, 유비쿼터스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IT)의 급속한 발전, 물류의 글로벌화와 분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글로벌기업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재고 감축과 원자재 조달비용 절감, 신속한 고객지향적 서비스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자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과 같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는 한 국가의 영토 중 일정지역을 외국으로 간주하여 비관세조치 등 조세 감면 혜택, 각종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나 수출지원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유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 균형개발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법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천연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한 자원 획득 및 경제 입국이 절실히 요구되던 우리나라는 외국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1970년대 초의 수출자유지역 제도를 필두로 2000년대 초에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거쳐 현재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종합보세구역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였던 시절에 이러한 경제정책 및 제도는 외국의 선진 기술 및 자본을 끌어들이어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관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자유무역지역 등 여러 경제 특구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지역 경제 및 물류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의 활성화에 대한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개의 자유무역지역<sup>1)</sup>과 8개의 경제자유구역, 86개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고 외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지역 균등발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밀려 전문성과 특화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다보니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

1) 13개의 자유무역지역 : 7개(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춘, 울산, 김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6개(인천국제공항, 부산항(용당,감천,남항,신항지역 : 4개로 구분하기도 함),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의 물류중심의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있음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어 활성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2014.1월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유무역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의 경우 0.7%(전체 수출 5,596억불, 자유무역지역 수출 38억불)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것도 2011년 51억불에서 25%감소한 것으로 이는 종합보세구역의 112억불보다 낮은 수치”라고 발표하였는데,<sup>3)</sup> 이에 일부에서는 막대한 국비가 투자될 뿐 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차별이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폐지 또는 다른 경제특구와의 통합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욱이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블록화 현상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최근 한-중 FTA도 가시명되어 자유무역지역의 큰 잇점 중 하나인 비관세혜택의 효과가 약화되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내 외투기업과 국내 입주업체와의 차별 등에 따른 불만이 있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쟁 체제하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등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고찰하여 그 필요성을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종합보세구역 등 국내 유사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과 대만 등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2) 이상훈,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 이슈&진단(경기개발연구원, 2011.8월호), P.1-2, 2011.8.

3) 관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무역 1조달러 달성의 견인차, 보세가공 제도“, 2014.1.15.

4) 인천신문, “입주기업 없는 자유무역지역 갑론을박“, 2015.3.1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 등 유사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유사 경제특구를 조사 연구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제도적·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이해하고, 이어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 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주된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역과 유사제도에 관련된 국내외 학자들의 저서 및 연구 논문, 연구단체의 학술지, 무역기관의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신문기사 포함), 그리고 관련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내용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상술한 연구범위에 따라 연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논술하기 위해 논문을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개관, 선행연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지정현황, 입주자격, 혜택, 특징, 운영성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구역, 종합보세구역 등 국내 유사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유무역지역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의 자유무역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의 차이점 및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상기 기술 사항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의 당면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각 장별 요약과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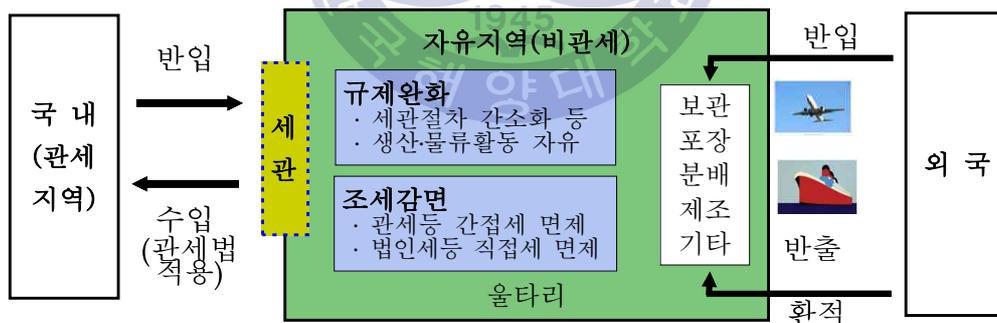
## 제 2장 자유무역지역의 개관 및 운영현황

###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개요

####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Z : Free Trade Zone)이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공항만 또는 내륙 지역 등 특정 장소에 일정한 면적의 구획을 정하여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지역(비관세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면제 특전을 부여하고 물품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별지구라고 정의된다.

<그림 1>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자료 : 관세청(2001), 관세자유지역 업무 편람 p.4의 그림을 재구성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자유항(FreePort) 등 전 세계적

으로 다양한 유형들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인 목적 및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다.5)

자유무역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자유항을 기원으로 본다. 12세기 이후 중세시대에 이탈리아 리보르노(Livorno), 베니스 등 항구에 자유무역에 대한 특권을 주었는데, 이를 효시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뉴욕, 싱가포르, 홍콩이 대표적인 자유항으로 번영을 누렸다.

자유항(Free Port)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자유무역지역 의미의 다른 이름으로 전세계 곳곳에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미국에서는 1934년 외국무역지대 설치법(Foreign Trade Zone Act)에 따라 뉴욕항에 외국무역지대를 설치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1965년 칸드라 지역에 수출가공지역, 대만이 1966년에 카오슝에 수출가공구, 한국은 1970년에 마산에 수출자유지역, 중국은 1990년 상해에 보세구라는 경제특구를 최초 설치하여 각 항구 및 주요 산업단지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표 1> 각 국의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명 칭	설치 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전통적 용어(19세기 이후)
외국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미국, 인도
자유공업지역(Industrial Free Zone)	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Free Zone)	아랍에미리트
수출자유지역(Export Free Zone)	아일랜드, 한국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중국
투자진흥지역(Investment Promotion Zone)	스리랑카

\*자료 : ILO/UNCTC, Economic and social effect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xport processing zone, 1998.

5) 장개,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8. p.4-6

## 2. 자유무역지역의 법률상 정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FTZ법」이라 함)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FTZ법 제4조6)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역내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FTZ법 제1조). 이를 위해 외국기업 또는 내·외국합작기업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부지사용료의 할인, 관세 및 내국세 감면 등 각종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주조건을 제공하고,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및 화물관리의 자율화 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수출입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관세영역(보세구역과 자유항의 중간형태)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 외국물품 상태로 물품의 사용·소비가 가능하고, 보관·재포장·보수·조립·가공·전시·폐기 및 기타 유사행위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허용되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거점 물류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지원 대상 업종은 국제제조기업의 물류부문이나 국제물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하역, 운송, 보관, 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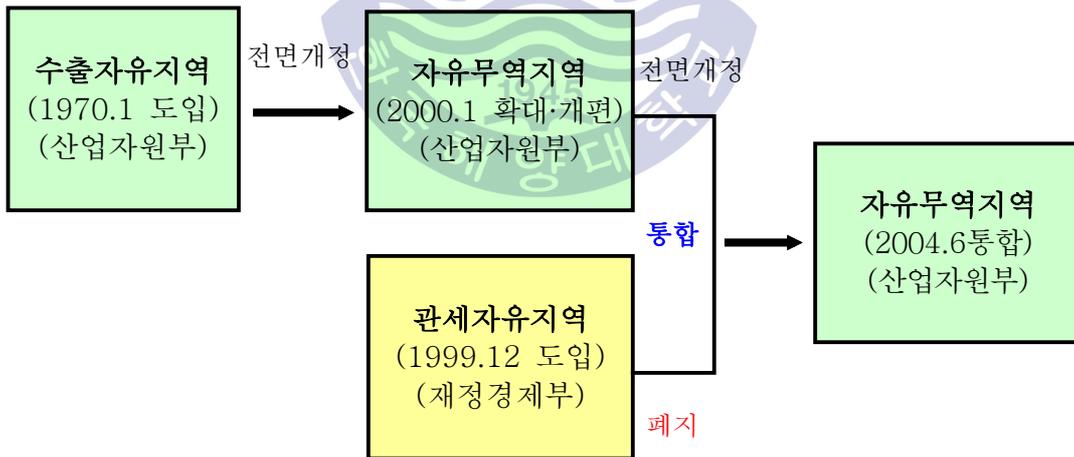
6) FTZ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판매, 보수 및 단순가공업과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정비·조립업, 선용품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자본과 기술력 및 부존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수출 및 고용증대를 꾀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름의 자유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 1월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수출자유지역」 제도를 도입, 운영한데 이어, 2002년 1월에는 국제물류업체와 수출업체 등에 관세부과유예 및 통관절차 간소화로 공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로운 물류업 보장을 목적으로 한 「관세자유지역」 제도를 추가로 도입, 시행하다가 2004.6.23.부터 「자유무역지역」 제도로 통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14.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산·울산 등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7개, 부산항·인천국제공항 등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6개 등 총 13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있다.<sup>7)</sup>

<그림 2> 자유무역지역 변천도



7) 산업통상부 산업물류투자팀, 자유무역지역 홍보브로셔, 2014.6.

### 3. 자유무역 관련 제도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무역지역은 특정지역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와 운영자나 지정절차, 관리권자 등 관련 규정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이 유사한 국내 제도로는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종합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있다.

#### 1)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1960년대 우리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산업자본과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당시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서서히 세계시장에서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촉진과 선진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1970년 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고, 경상남도 마산시(현재의 창원시)와 전라북도 이리시(현재의 익산시) 2곳에 수출자유지역을 지정·운영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으로, 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 가공, 포장, 혼합 등 수출에 관련된 기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며, 관세법 등 조세상의 제한을 배제 내지 완화해 주었고, 대만의 수출가공구와 기능이 거의 유사한 제도이다.<sup>8)</sup>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70.1월 착공하여 전기·전자, 정밀기기, 금속 등 업종의 외국계 회사가 입주하였고, 2000.7월 마산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 후, 2015.3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니그룹의 한국소니전자(주), 휴대폰 제조

8) 지영근,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8, p.10.

업체인 노키아가 전액투자한 노키아티엠씨(주)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외국단독 또는 합작회사 90여개가 활발히 운영, 국제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세계경제가공지역협회(WEPZA)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개도국의 외자유치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sup>9)</sup>

익산 수출자유지역은 1974.12월 착공하여 귀금속, 섬유 등 업종의 회사가 입주, 운영하였고, 2000.7월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난관, 섬유업계의 불황 등의 사유로 2010.12월 「FTZ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익산자유무역지역을 해제(지식경제부 고시 2010-227호)하였고, 2011.1월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

수출자유지역 제도는 원재료를 세관당국의 수입통관절차 없이 특정지역 내에 반입하고,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가공·제조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도로써 공업화 초기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와 양질의 저렴한 국내 노동력을 결합시켜 우리나라 수출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sup>10)</sup>

## 2)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

국제물류가 외국으로부터 최초로 반입되는 공항만 지역에서 수입물품을 가공·조립·전시·판매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공간으로의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한 제도가 「관세자유지역」으로, 2002.1월부터 2004.6.23.까지 「자유무역지역제도」에 통합될 때까지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자유지역의 근간인 법규의 정식 명칭은 1999.12월 제정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관세 자유지역 제도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를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었다.<sup>11)</sup>

9)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http://www.ftz.go.kr.kor>)

10) 두산백과사전, 2014. 네이버(<http://www.naver.com>)

관세자유지역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관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등 내국세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물품으로 간주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한마디로 관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관세법상 외국과 유사한 비관세지역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자유지역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를 열어 당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장이 요청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 건'을 심의한 끝에 도입을 결정하였고, 부산항의 경우 신전대컨테이너터미널 일대와 구 제일제당 부지 및 감천항 한진터미널 부지 등 127만 8,000평방미터, 광양항은 1단계 컨테이너부두와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등이 지정됨으로써 부산항과 광양항의 종합물류 기능 향상과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등록사업으로 분류되는 하역·운송·전시·판매·가공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관세자유지역제도는 도입된 이래 제도의 운영 및 시행단계에 있어 지정 요건 충족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운영에 있어 물류활동상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 지역을 일원화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4. 3. 2 제정되었고, 현재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11) 이법은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국가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3)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Zone)

종합보세구역은 국내의 산업단지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수출증대 및 물류촉진하기 위해 1998. 12. 28. 관세법<sup>12)</sup> 개정시 새로 도입된 관세상 지원제도로,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 도입배경은 당시 IMF 지원체제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조업·산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였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도약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sup>13)</sup>

종합보세구역은 복합·다기능 보세구역으로 보세구역의 특성인 관세부과 보류 외에 한 번의 설영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화물의 장치기간 및 설영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동일 보세사업장 내에서의 물품 이동신고를 생략하고 있고, 특허보세구역에서는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보수작업·역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는 등 혜택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4.1월 종합보세구역은 35개 구역에 70개 업체가 수산물(부산 감천항)·탱크터미널(울산, 여수등 화학제품 업체), LME(비철금속 보관) 등 업종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5.596분의 2%인 112억분이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되었다고 한다.<sup>14)</sup> 그 외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2) 관세법 제197조~제205조에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 물품 반출입등 관련 규정 신설하였음.

13) 최낙균 외 2(관세청 용역보고서), “다기능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4. P.4~5.

14) 연합뉴스 보도, “관세청, 수출 30%, 보세가공지역에서 이뤄져..”, 2014.1.06.

## 제2절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기타 유사제도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자유무역지역이 출범한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기에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무역의 비교연구가 활발하였고, 그 이후에는 마산, 광양, 평택·당진항 등 개별적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및 분석이 종종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외자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주요 경제정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및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 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최해범(2003), 정수원(2003), 지영근(2014), 장계(2007), 노윤진·김승철(2008), 박재곤(2008), 장영문(2011), 김영국(2013), 김현덕(2014), 정준식(2014) 등이 있다. 이중 먼저 최해범(2003)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에서 협소한 공단부지,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기술개발 및 고용보조금 관련 규정의 미흡,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생산시스템 보완, 물류·유통구조의 개선, 제도정비 및 보완, 기업중심의 기술혁신체계 확립,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sup>15)</sup>

정수원(2003)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기업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기업 유치방안을 모색하면서 외투기업체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 저렴한 대지 임대, 조세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FTZ 관련 행정절차 및 제도 정비, 투자지역의 확대, 노사 관계 안정성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15) 최해범.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제고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연구지 8호, 2003.12/

16) 정수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향”, 한국무역학회지 25권, 2003.7

지영근(2004)은 관세자유지역과 통합된 새로운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연구하고, 관세면제 범위의 확대, 자유무역지역 지정 절차 간소화, 화물관리방법의 차별화, 수요자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17)</sup>

박재곤(2008)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자유무역지역제도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정책적인 결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지역 균형 개발 목적보다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이라는 국가 경제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입지를 제공하며, 자유 무역지역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제도와 통합 및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18)</sup>

노윤진·김승철(2008)은 대중국 교역의 종합적인 물류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활성화방안으로 부가가치 물류창조형 자유무역지역, 대중국 교역기업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거점, 장·단기적인 세부적 마케팅 전략의 수립,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sup>19)</sup>

위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초창기의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으로 세계 인센티브, 행정제도 개선 등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 상당히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10여년 이전의 연구들로서 관세철폐 및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FTA협정 등 현재의 세계 경제 및 무역·물류 흐름과 비교하여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현시점의 무역환경을 반영한 정책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17) 지영근,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8.

18) 박재곤, “자유무역지역 정책의 추진방향”, 「KIET 산업경제」 통권 117호, 2008.

19) 노윤진·김승철,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방안”. 영상저널 제1권, 2008.8.

## 2)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연구

김영국(2013)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지정되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이나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 부족으로 외자유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성에 의거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거점도시 중심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 경영환경의 투명성 및 노사관계의 정립 등을 주장하였다<sup>20)</sup>.

장영문(2011)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성과 미흡,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 자유무역지역 등과의 차별성 부족,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출혈경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의 가능성 기준에 의한 구조조정, 통합된 관리기관 설립,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고도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sup>21)</sup>

김현덕(2014)은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광양만권은 전통적인 물류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생산기능 강화 및 인근 울촌 자유무역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을 주장하였다.<sup>22)</sup>

위와 같이 최근의 연구들은 자유무역지역보다는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많이 연구하는 추세에 있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도 마산, 광양 등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개별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20) 김영국,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1) 장영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2011.5.

22) 김현덕,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5권, 2014.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제도를 비교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자유무역 제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 비교하여 현재의 국제무역환경을 감안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이점에서 타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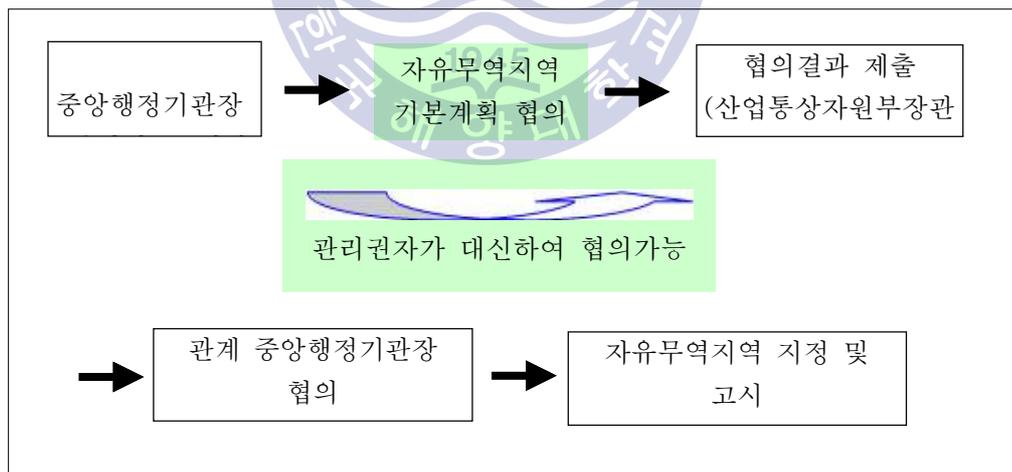
### 제3절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FTZ법」 제4조)

<그림 3> 자유무역지역 지정 절차



\*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www.ftz.go.kr>)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 ①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② 공항 및 배후지 (항공법 제2조제7호)
- ③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 ④ 항만 및 배후지 (항만법 제2조제1호)

<표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구 분	지정 기준
산업단지형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 반출·입이 용이한 지역
공항형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전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당해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항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포장·혼합·수선·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항만형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국제컨테이너선박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당해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만과의 물품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포장·혼합·수선·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유통단지 또는 화물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자료 : FTZ법 및 관련법률 요약 정리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후 200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여 우리나라는 2014.6월 현재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 3가지 형태의 13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213개사, 국내기업 130개사 등 모두 343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다.<sup>23)</sup>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장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서로 상이하다.

<표 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14.6월말 기준)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위치	경남 창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강원 동해	전남 순천	울산 울주	전북 김제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총사업비(억원) ('00년 이후)	2,513	1,884	1,514	585	762	2,287	1,160
업체수(외투)	102(58)	30(12)	33(23)	13(8)	9(8)	27(6)	3(2)
수출('13년, 백만불)	1,527	391	352	9	28	-	-
입주율(%)	100	85.3	95.9	26.5	42.9	97.3	5.4
고용인원	6,389	1,352	2,801	73	111	-	70
주요업종	전자, 전기	기계, 금속	조선	전자, 전기, 기계	철강, 기계, 화학	금속, 화학, 자동차	전자,기 계, 자동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23)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표 4>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현황('14.6월말 기준)

구분	부산항 <sup>24)</sup>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	9,363	8,880	2,014	724	1,429	3,015
업체수(외투)	58(56)	34(23)	-	-	13(11)	21(6)
고용인원(명)	2,291	605	-	-	716	7,800
입주율(%)	100	68	-	-	84	84(1단계) 27(2단계)
형태	항만형	항만형	항만형	항만형	항만형	공항형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 2.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각종 세제 특례 및 자유로운 물류·무역을 보장하는 등 국내 일반지역에 비하여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자유 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지향 등의 법 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엄밀히 심사함이 마땅하다.

이에 「FTZ법」 제 10조의 규정에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자세히 명문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24) 부산항은 4개지역(용당,감천,남항,신항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1개로 구분함

-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외투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다음의 4~6호 해당업종 제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4) 수출입을 주목적으로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입주허가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대비 수출입거래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5)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①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 사업
  - ③ 연료·식수·선식 및 기내식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지원업종>** - 시행령 제7조⑤항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 3.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과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은 관세법상의 수출입절차가 적용되나 비관세지역인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FTZ법에 의한 반출입절차가 적용되며 관세법은 FTZ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5)

#### 1) 외국물품 반입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외국물품과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림 4> 외국물품 반입절차 흐름



○ FTZ법에는 하선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관세법 절차에 의한 하선신고 및 하선결과 이상보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25)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P.46-88

-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부터 컨테이너화물은 3일, 곡물·원유 등 산물은 10일 내에 당해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창고 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외국물품 반출

<그림 5> 외국물품 반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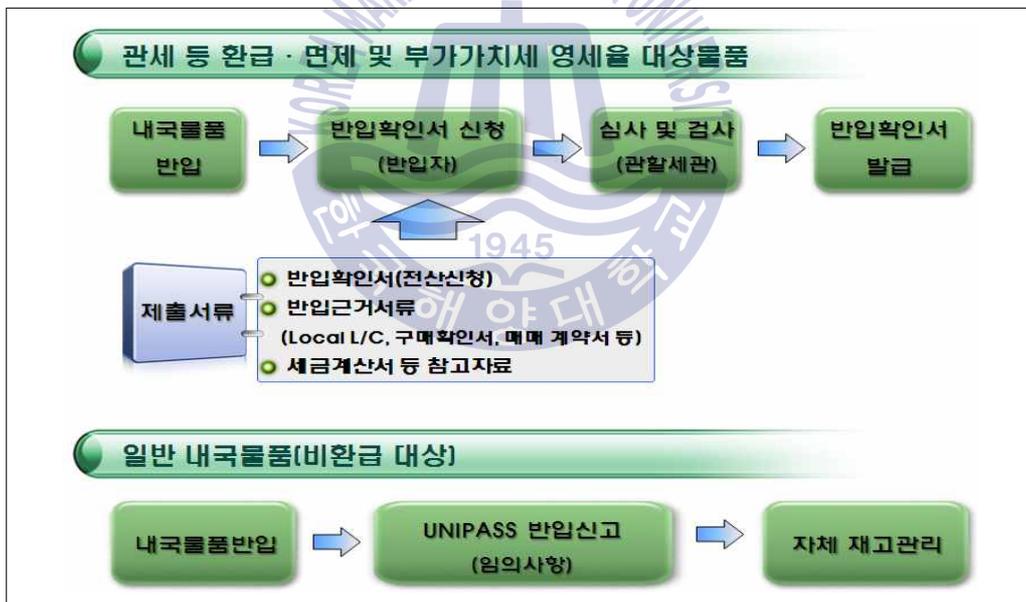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반출물품의 형태별로 반입된 원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와 제조·가공 등을 거쳐 반출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반출 목적지별로 국내(관세영역)반출과 국외반출로 나누어지는데, 반출물품의 형태와 반출 목적지에 따라 그 절차가 달리 적용된다.

- 관세영역으로의 물품반출은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 후 관세영역내로의 반출이 가장 일반적으로서 수입통관(내국물품화) 및 타 자유무역지역 등으로의 보세운송 절차에 의한 반출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시반출과 역외작업반출, 물품폐기반출 등이 있다.
- 국외반출은 크게 반입 원상태로 수출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쳐 반출되는 경우와 사용소비신고 후 제조가공물품을 국외반출하는 국외반출신고, 일시장치 후 선적(환적)을 위한 환적반출이 있다.

### 3) 내국물품 반입

<그림 6> 내국물품 반입 흐름도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은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 포함) 반입신고 의무가 없다. 즉, 입주기업체가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을 가동할 경우 반입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없다.
- 그러나 입주기업체가 자기 필요에 따라 내국물품 반입확인을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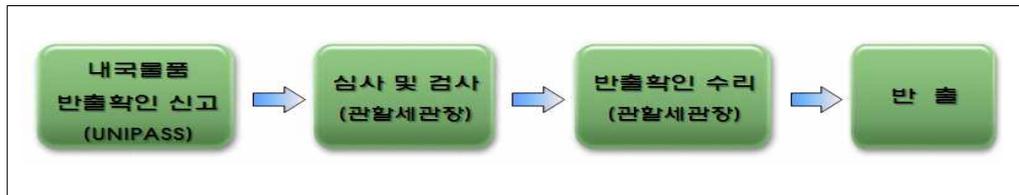
용 도	물품종류	사용 서식
관세환급	1.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2. 원재료·윤활유·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3.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u>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u>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기와 같음	<u>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u>
반입근거 자료활용	모든 내국물품 내국물품반입과 달리 반출의 경우 세관장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됨. 내국물품 반출 시 반입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	<u>내국물품반입확인서</u>
내국물품 원재료 사용신청	내국물품 원재료 산업단지형FTZ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입통관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함. 이때 사용된 내국원재료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를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	<u>내국물품의 원재료 사용(승인)신청서</u>

-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UNI-PASS<sup>26)</sup> 상에 간편하게 반출입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6) UNI-PASS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함.

#### 4) 내국물품 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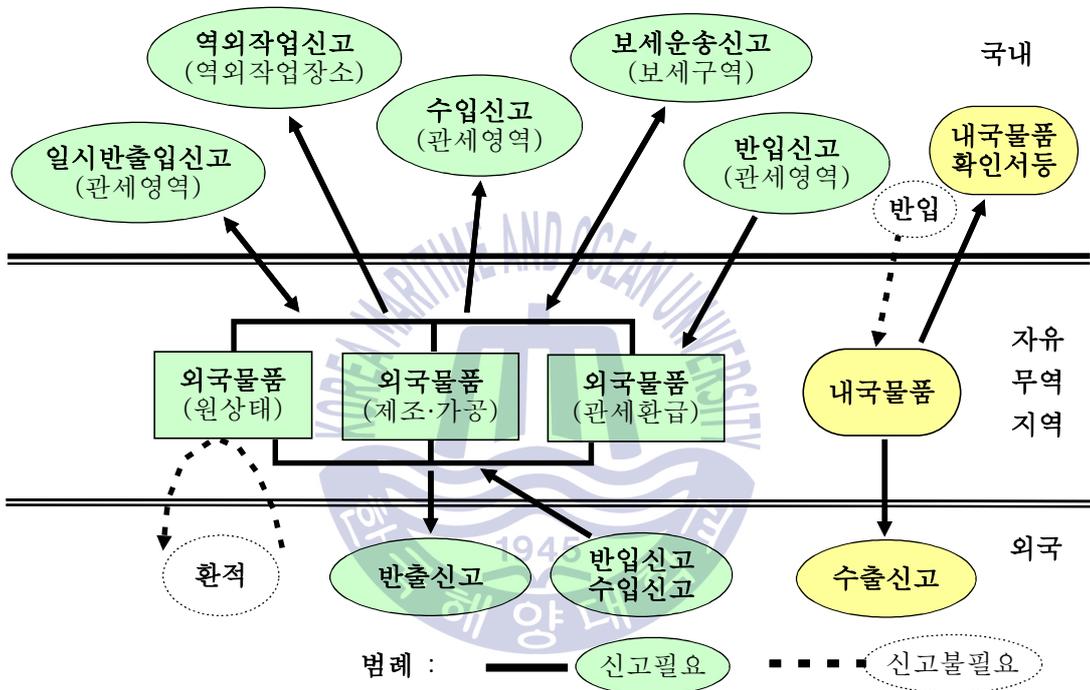
<그림 7> 내국물품 반출 흐름도



- 내국물품 장치에 대해 특허보세창고 경우에는 보세화물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보세구역의 영업수입 보전차원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는데 반해 자유무역지역은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국물품 반입보다 반출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이는 자유무역지역이 지리적으로는 국내에 위치하나 관세영역과 구별하여 세제 및 제도상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및 국제물류 유치에 유도하면서도 자유무역지역 설립취지와 관련성이 적은 내국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목적과 무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 이때의 내국물품은 관세영역에서 이미 내국물품화된 물품이 반입되어 반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당해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되거나 외국물품과 혼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은 제외된다.

앞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 반출입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8>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출입 신고 총괄표



\* 자료 :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

#### 4.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각종 조세 및 임대료 감면,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 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고, 소요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27)</sup>

##### 1) 관세유예 등 조세특례 제공

###### 가. 관세 유예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비관세, 즉 관세를 유보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수입 통관한 외국물품이 포함된 물품에 한정한다)은 관세를 환급하여 준다.

######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 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교통유발부담금<sup>28)</sup>을 전액 면제하여 준다.

##### 2) One-Stop 서비스 등 행정편의 제공

입주허가에서부터 공장건축 허가, 외자도입, 통관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 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세관, 소방서 등 정부

27)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4.7. 자유무역지역 홍보브로셔. p4.

28)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1조에 근거해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

기관이 상주하여 One-Stop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준다.

### 3) 저렴한 임대료 혜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하여는 자가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를 부지가액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준다. 아울러 외투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다.

또한 대규모 투자(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

첫째, 공장부지 및 표준공장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여 준다.

<표 5> 외투업체 임대료 면제 조건

공통조건	개별조건		임대료	비고
	신규투자금액	업종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1대주주인 외투기업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무상 (100% 감면)	임대기간 : 50년 이내 (50년 연장 가능)
	5백만불 이상	부품·소재 산업		
	5백만불 이상	제조업	75% 감면	

\*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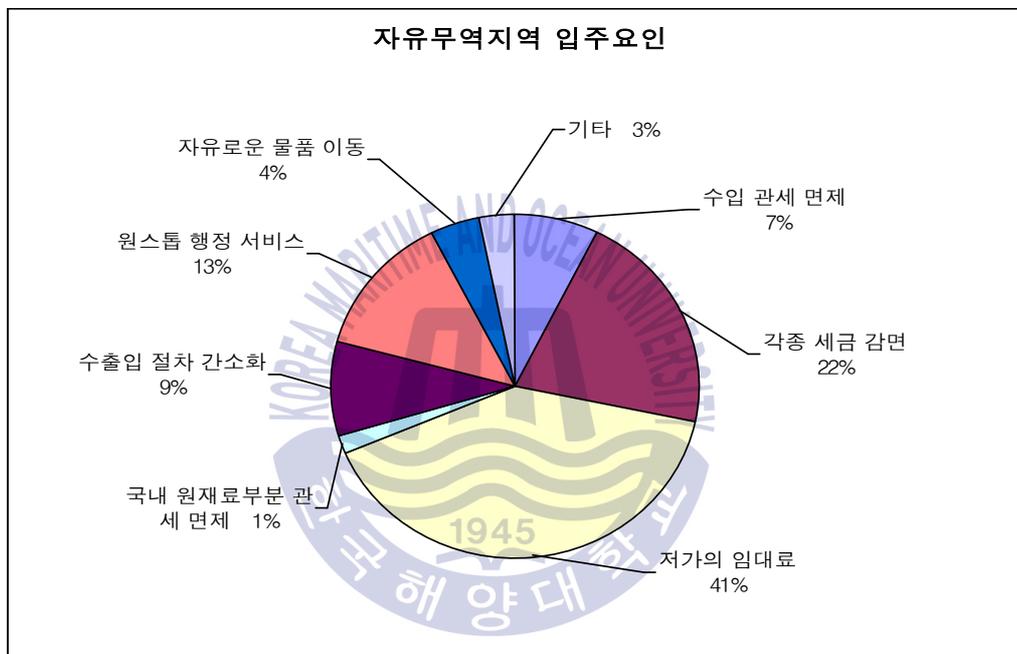
둘째, 상기 관세특례 등 혜택 외에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의 추가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 투자시에 법인세, 소득세는 3년간은 전액 감면, 추가 2년간은 50%의 감면을 하여주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100% 면제하여 준다.

셋째, 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무를 미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준다.

## 5.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요인 및 애로사항

관세청은 2012.9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하여 입주요인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때 입주요인은 재정 인센티브의 제공 (저가 임대료, 조세 감면 등)과 관리기구에 의한 행정서비스(원스톱서비스,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가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29)

<그림 9> 자유무역지역 입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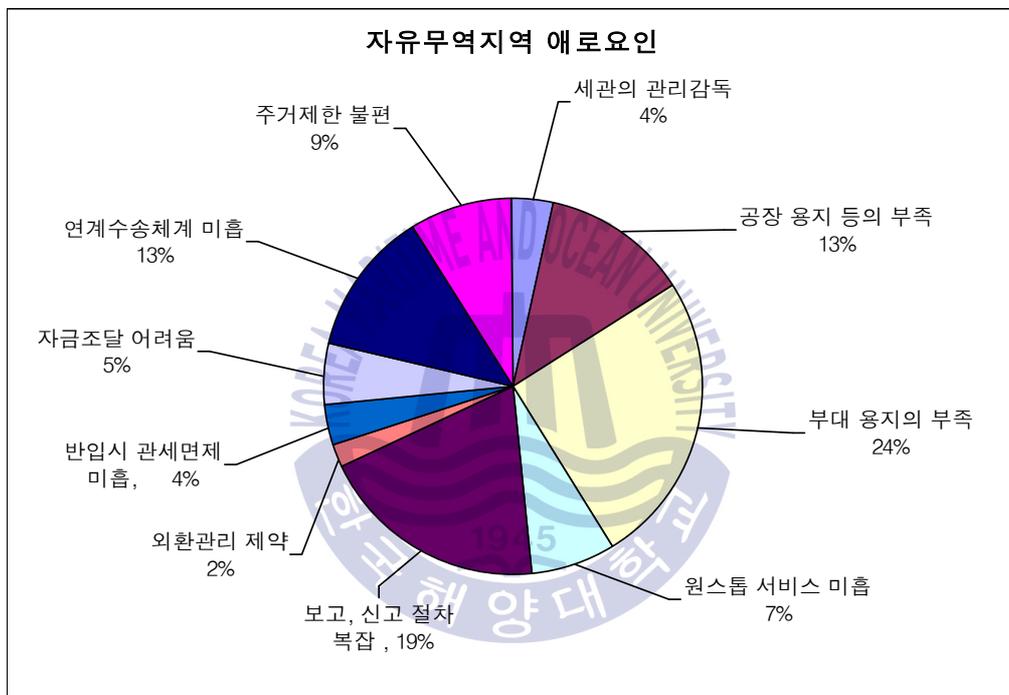
\* 자료: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 자유무역지역 입주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2011.7.  
 ⇒ 최근 입주한 34개업체중 설문 응답한 31개의 결과를 중복응답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집계

- ① 저가의 임대 부지 및 건물 제공(27개 응답, 41%)
- ② 각종 세금 감면(14개 응답, 22%)
- ③ 관리기구에 의한 원스톱 행정서비스(9개 응답, 13.4%) 순으로 높게 집계

29)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자유무역지역 통계분석 보고서. 2012.9. P.4-5. 요약 정리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애로요인으로는 공장 및 부대용지 부족, 연계수송체계의 미흡, 보고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요요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유무역지역의 재정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도 관리기구의 행정서비스 질을 계속적으로 관리·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출입절차 간소화 및 자유로운 물품이동은 중요한 입주요인으로써 세관 보세화물관리의 효율적 수행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0> 자유무역지역 애로요인



\* 자료: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 자유무역지역 입주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2011.7.

⇒ 최근 입주한 34개업체중 설문 응답한 31개의 결과를 중복응답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집계

- ① 공장, 물류시설 용지 이외의 부대 용지의 부족(14개 응답, 24%)
- ② 과도한 보고, 신고, 장부기재 등 복잡한 절차(11개 응답, 19.6%)
- ③ 공장용지 및 물류용지의 부족(7개 응답, 13%)과 항만, 공항, 철도 등과의 연계 수송체계 미흡(7개 응답, 12.5%) 등으로 높게 집계됨

## 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자유무역지역은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을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서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투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다양한 고용창출의 촉매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는 여타 국내기업과의 경쟁 및 파급효과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필두로 현재 13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마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은 2000년 이후 지정되어 아직까지 수출실적이나 고용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문제점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미흡하다.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성공적이었으나, 익산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부족 등이 그리 성공하지 못하여 2010년 지정 해제되었다. 그런데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부 철수하여 활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최근 지정된 다수의 자유무역지역도 외국인 투자기업보다는 국내기업이 참여하거나 합작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투자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유수의 글로벌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관리조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만, 관리주체는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장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실제 관리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등으로 상이(相異)하다.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의 주요업무는 정부가 직접수행하고, 공공성이 중시되지 않거나 상업성이 중시되는 일반 관리업무는 공동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즉 관리주체와 관리조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sup>30)</sup>

다음으로 주변 국가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여 글로벌 생산 및 유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상하이 경제자유무역시범구 등 대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및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주변 국가들의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31)</sup>

또한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이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별성이 약하다. 경제자유구역이 광범위한 경제특구로서, 주거, 의료, 교육, 업무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기능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물류, 무역활동에 초점을 둔 특별지역

30) 변재용,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2. P.57.

31)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2.9. P.55.

이라는 점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주요 목적으로 비슷한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군산과 김제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시너지효과가 날수도 있으나, 굳이 두 제도를 별개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32)</sup>

끝으로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의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국인 투자에 비하여 훨씬 크다. 투자지역 유형 중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지역이므로 외투기업에만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은 타당하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차별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33)</sup>

이 외에도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자유무역지역 등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실질적 운영 및 상시화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

32) 관세청, 상계서, p.58

33) 김재호·윤현석,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4권, 2014.9. P.1201.

## 제3장 자유무역지역 관련 유사제도

### 제1절 경제자유구역

#### 1. 경제자유구역의 개요

해외 투자자본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선정된 경제특구를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라 하며,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 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화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조, 물류 등 무역을 위한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거주 환경에 필요한 병원, 학교 등 생활공간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구상을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제시하였고, 아울러 2013.7월 제59차 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 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2022년까지 8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sup>34)</sup>

34) 파이낸셜뉴스 등, “정부 제59차 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2013.07.03.

경제자유구역은 국가 간 개방과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IT (정보기술)·BT(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 일류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거점지역을 창출하려는 핵심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p>35)</sup>이 제정된 이후 2003년에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고, 2008년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이 지정되었으며, 2013.2월 동해안권,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되어,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sup>36)</sup>

<표 6>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경과

구 분	추진경과
'02.1.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 발표
'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3.7.1 시행)
'03.7.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발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창설
'03.8.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03.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3.10.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04.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8.4.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08.7.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08.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3.2.	동해안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13.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3.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자료 :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ز.go.kr>)

35) 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36)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ز.go.kr>)

입주업종은 고도기술수반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물류업, 관광업, 지식기반 산업(IT), 디지털컨텐츠산업, 금융업, 생명공학산업(BT) 등이 해당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2가지 방식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하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작성한 후 산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을 하면, 산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검토하여야 할 주요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 ①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 ②지역경제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 ③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 ④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광역 교통망
- ⑤정보통신망, 전력 등 기반시설
- ⑥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 ⑦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등

<표 7>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2015.5월 기준)

명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위치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강서구) 경남(진해구)	전남(여수, 광양) 경남(하동)	경기(평택) 충남(당진)
지정일	`03.8.11.	`03.10.27.	`03.10.27.	`08.4.25.
개발완료(년)	2022	2020	2020	2020
사업비(원)	15조	36.1조	15.8조	7.4조
기본구상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복합물류 -첨단수송, 기계 -여가, 휴양	-석유화학소재 -철강연관산업 -항만물류	-자동차전장부품 -IT부품소재

명칭	대구/경북	세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위치	대구, 경북 (경산, 영천, 포항)	전북 (군산, 김제)	강원 (강릉, 동해)	충북(청원, 충주)
지정일	`08.4.25.	`08.4.25	`13.2.4	`13.2.4
개발완료(년)	2020	2020	2024	2024
사업비(원)	4.6조	6.5조	1.3조	1조
기본구상	-IT융복합 -첨단수송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자동차기계부품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관광	-금속, 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 자료 :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

### 3.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혜택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특구로서, 각종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 기관 설립운영,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 8>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혜택

구 분		감면율	감면요건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	제조업	3년간 100%면제	1천만불 이상 투자시
	인프라형 기업	그 후 2년간 50% 감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5년간 100% 그 이후 2년 50%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 5백만불 이상(연구원 10이상) SOC사업 : 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 관광, 물류, 연구시설
취등록세 등 지방세	제조업	3년간 100% 면제, 그다음 2년간 50% 면제	
	인프라형 기업		
	기타(외국인 투자기업)	5년간 100% 면제(최대 15년) 그 다음 2년간 50% 면제	
재정 지원	보조금 지원	·현금지원 제고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일정기준 이상의 첨단산업의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매각 허용	
선진국 수준 생활환경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설립 허용 ·행정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테마파크, 공원 등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 등	
One-Stop 행정서비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 자료 : 산자부 경제자유기획단 홈페이지 자료 저자 요약

#### 4.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성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 경제자유구역 개청 이후 2012년까지 외국인투자 본 계약건수는 189건 61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의 6% 수준으로서 아직까지는 지역균형 발전 및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선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역을 포함한 관광, 의료, 학교 등 외국인 거주 생활환경에 필요한 모든 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유치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른 이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2012년까지 FDI신고액이 45억불 수준으로 29개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 첨단지식산업, 의료, 물류단지 등이 구축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송도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시티 건설이 2017년까지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외국인학교, 의료기관도 증가추세에 있어 점차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외자유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2014년까지 126개 외국인투자로부터 17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여 조선·자동차 첨단부품, 물류 부문을 활성화하고 있고, 특히 국내 최대의 부산신항을 활용할 제조, 복합물류업체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광양만권은 물류·제조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8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일관된 정부의 경제정책,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정주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외국인투자를 유도해야 함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이해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13.7월 정부에서 8개 경제자유구역에 2022년까지 82조 원을 추가 투자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 5.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도입·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80조원의 대규모 정부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 장기간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점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청 및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른 특구와의 중복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지 선정 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려는 측면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논리 하에 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었다는 지적이 많다.<sup>37)</sup>

둘째, 원스톱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각종 행정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규제와 복잡한 개발 사업 인·허가절차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나, 각종 개발법의 인·허가가 절차에 따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대로 개발 시기를 맞추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sup>38)</sup>

셋째, 주변 경쟁국 자유무역지역보다 매력적이지 못한 인센티브이다. 주변 경쟁국 개발특구에 비해 “세제상 혜택’이 미흡하고, 수혜대상 투자 업종도 제한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 기준도 획일적이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특구에 비해 외국인투

37) 김영국,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지, 2013, P.176.

38)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2.9. P.55.

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의 우월성이 적고, 또한 입주만하는 국내 및 외국 기업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입주와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sup>39)</sup>

<표 9>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주변국가 경제특구 비교

구분	한국 (경제자유구역)	싱가포르 (전국)	홍콩 (전국)	중국상해 (푸둥신구)	두바이 (JAFZ)
전담조직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EDB (경제개발청)	INVEST HK	경제특구 및 경제 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PCFZC (항만,세관,자 유구역 공시)
소득세율	최고소득세율: 35% (외국기업인에 한하여 17% 단일세율적용 또는 소득세 30%공제 택일)	최고소득세율: 18%(0-18%)	최고소득세율: 17% (외국기업인에 15%)	최고소득세율: 45%	면 제
법인세율	25%	18%	16.%	15-25%	면 제
감면대상	입주기업에 한함 (국내기업 역차별)	ETB가승인한 국내·외 기업(첨단기술 신규투자 등)	별도의 세제 감면 없음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고 업종별 우대	-
세제 인센티브	법인세 등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 (제조, 물류, 관광업) 법인세 등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고도기술수반 산업, 사 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선도기업: 5-15년 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정: 10년간 법인세율 13% 이하 적용 생산설비신규투자 에 대해 3년간 33.3% 가속상각	없음	하이테크기업에 대 해 15% 우대세율적 용(일반기업도 신제 품개발, 신기술연구 개발비용이 발생했 으나 무형지산을 형 성 치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5% 부과
교육	외국교육기관설립허용 K-12 내국인 입학가능	외국교육기관설립 허용, K-12 내국인 입학 제한적 허용 (완화추세)	외국인 교육기 관 설립허용 내국인입학 허 용 50여개	외국인 전용 국제학 교(상해19개) 및 내 국인 입학 허용되는 중의 합작학교 등 운영	약 80개의 외 국인 학교 설 립

\*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취합

39) 관세청, 2012.9. 전계서, P.56

넷째, 기본 인프라 부족,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미흡이다.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에 비해 입지여건, 인프라 등이 미흡하고 국고지원과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적기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환경과 경영환경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0)</sup>

다섯째, 개발주체와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임에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관광, 문화, 제조, 서비스, 물류, 주거 등 모든 분야의 관련한 특정 지역으로서의 도시와 지역개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개발계획과 달리 투자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유연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노사환경이다. 외투기업들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될 부분이 바로 안정된 노사환경일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점, 정리해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

40) 김영국, 전게서, P.177.

## 6.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의 비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 최종 목표로 서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법적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정 목적	○외국인투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지정 위치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국제공·항만 주변지역
특성	○비관세지역		○특별행정구역수준(자치단체조합)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단형)	○해양수산부장관(항만형) ○국토교통부장관(공항형)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지역	○산단형 7개 :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진, 김제, 울산	○항만형 5개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평택당진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8개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군산, 새만금,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입주 자격	○외투기업·내국기업 ○제조업 : 수출주목적 내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물류업, 무역업 등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업종	○제조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제조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제조업·관광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조세 감면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초과 25% ○지방세 : 5~15년 (조례 : 최고 15년 100%)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초과 25% ○지방세 : 5~15년
관세 등 부과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본재 5년간 면제 ○부가가치세 부과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 분양 (부지가액 10/1,000수준)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 : 100% (1백만불이상) ○일반제조 : 100% (1천만불 이상)		○감면을 미결정(관리청이 결정)
행정 지원	○출장소 설치 -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		○시도지사 직속 전담행정기구 설치 -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 위임 사무, 시도 사무 등 수행

\* 자료 : 저자 정리

## 제 2절 외국인투자지역

### 1. 외국인투자지역의 개요

#### 1)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Area)

외국인투자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선진기술 이전, 고용 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형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감면·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sup>41)</sup>가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sup>42)</sup>

외국인투자지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거 1994년에 첨단 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촉진 목적으로 도입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sup>43)</sup>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일원화된 것으로, 종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14.5월 기준 20개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66개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 개의 외국인투자지역 사이에는 <표 1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입주지역, 지정요건, 부지지원, 조세감면 등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sup>43)</sup>

41)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의미함.

42) 정대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확대추세와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0.8. p. 13.

43)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 홈페이지(<http://fims.kicox.or.kr>)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의 폭이 다를 수 있고, 사전 충분한 검토없는 무분별한 지역 간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11>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비교

구 분	단지형 외투자지역	개별형 외투자지역
개 요	○중소규모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 입주('94~)	○대규모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97~)
위 치	○산업단지	○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외투자분 30%이상 등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운영현황(14.5)	○20개 단지	○66개 지역
입지지원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5%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 국비 : 수도권 40%, 기타 75%
지정시 혜택		
조세감면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	○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감면기간 - 국세 5년(3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별도 감면요건 없음 - 지정요건과 동일 ○감면기간 - 국세 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임대료감면	○75~100% 감면(필요시 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100% 감면(필요시 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현황

### 1)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단지형과 개별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즉시 공장착공이 가능하고 명시적인 외국인투자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투자지역 확대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지역의 3/4이상이 입주완료되고 신규투자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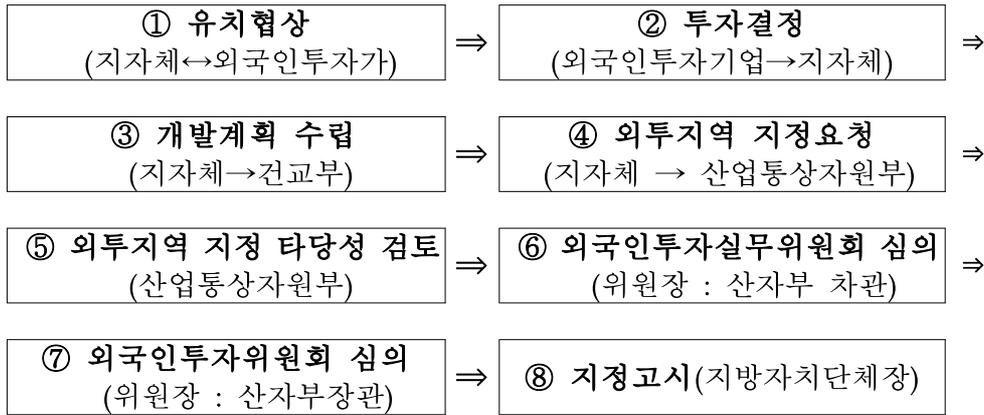
<표 1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업 종	기 준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	○ FDI 3천만\$이상
관광업	○ FDI 2천만\$ 이상 (관광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물류업	○ FDI 1천만\$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
연구개발시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 - FDI 2백만\$ 이상(석사 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개별형과 단지형의 지정절차는 동일하고, 지정요건 충족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경제적 효과(예, 기술이전, 고용창출, 조세수입)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그림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흐름도



\*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지정시 ③번 생략

###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형 60개와 관광·서비스형 6개 등 총 66개가 지정되어 있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경상도 8개, 경기도 4개, 전라도 3개, 충청도 3개 등 총 20개가 지정되어 있다.<sup>44)</sup>

### 3. 외국인투자지역의 혜택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조세지원제도, 현금 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1) 조세지원제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하여 준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여 주고,

44)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 홈페이지(<http://fims.kicox.or.kr>)

재산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5년부터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준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상기 법인세 등 국세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여 주고,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7년부터 1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준다. 또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3년간 면제해 준다.<sup>45)</sup> 개별형 외투자지역이 단지형 외투자지역보다 세제혜택이 조금 더 많은데, 이는 개별형이 단지형에 비하여 투자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2) 현금지원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sup>46)</sup> 아울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지원비율 및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 입지지원제도

지자체 등은 외투기업을 위하여 공장입지 등을 확보·개발하여 저가나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다.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75~100% 감면해 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시설 등 인프라 시설을 지원한다.

4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4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4. 외국인투자지역의 운영 평가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이전에는 110억불 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130억불 이상으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경제특구제도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외에도 한-미 FTA, 한-EU FTA 등 투자환경 개선과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매력도가 향상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범정부적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조금 높아졌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지수의 경우 2008년 23위에서 2012년 18위로 소폭 상승 하였고,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인 AT 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신뢰지수'도 지난 2007년 24위에서 2011년 19위로 5단계 상승하였다.<sup>47)</sup>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2013년까지의 외국인공장 가동 통계자료 <표16>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공장은 2013년의 경우 내국인 32천명을 고용하여 23조원의 생산효과를 발생시켰고, 111억불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596억불의 2%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외국기업 공장 가동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조원)	23.0	25.3	21.2	24.9	23.7
수출(억불)	159	151	104	113	111
고용(명)	23,739	28,048	32,284	34,685	32,165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http://fims.kicox.or.kr>)

47)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백서 2012」, P.548.

\* 산자부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만의 외투실적이 아닌 국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지역만의 외투실적 통계는 비교할 수 없었음.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기대만큼 고용 증가, 고도의 선진기술 이전, 지역 개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국내기업과의 연계성, 산업 발전과 고용 촉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한 선별적 외자유치 및 세제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8)</sup>

## 5. 외국인투자지역의 문제점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외투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및 행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의 차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투자지역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이다.

외국인의 투자관점에서 보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세제지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도입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지역 중 개별형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은 관세만 감면받거나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내·외국인투자의 조세형평성이다.

2013년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등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다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진출 후 다시 국내로 회귀시킨다는 관점에서 “해외기업의 국내유치”, 즉 외국인직접투자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48) 김군수의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2012-67, 2012.12. P.16.

셋째, 사후감면에 따른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조세정책이다. 하지만 세제지원방식이 사후감면이기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투자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조세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sup>49)</sup>

넷째, 일자리 창출보다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제도이다. 현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금액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다. 이상훈(2012)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56.1%가 고용기준으로 인센티브제도 개선에 찬성”이라고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6.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비교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도입 시기, 근거법률, 지정 목적, 지정위치 및 지역, 지정 및 관리권자 등이 상이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 의해 도입된 유사한 제도이다.

자유무역지역이 공항만 및 배후 산업단지에서 제조, 물류 측면에 비중을 둔 반면,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로 제조업에 치중하나, 외국인투자 유치 유인을 위한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의 문제점은 곧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참고자료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49) 김재호·윤현석, 전계서, P.1201-1203

<표 14>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의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단지형	개별형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 목적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물류기지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지정 위치	○항만, 공항의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산업단지내	○제한없음
특성	○비관세지역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 지정
지정 권자	○산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사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관리 권자	○산자부장관(산단형)	○해수부장관(항만형) ○국토부장관(공항형)	○사도지사	
지정 지역	○산단형 7개(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진, 울산, 김제)	○항만형 6개(부산, 광양, 인천, 포항, 평택당진)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20개 단지	○66개 : 개별 사업장
입주 자격	○외투기업·내국기업 ○제조업 - 수출주목적 내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물류업, 무역업 등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등 (외투지분 30% 이상)	○외투기업 ○제조업 : 3천만\$ 이상 관광업 : 2천만\$ 이상 물류업 : 1천만\$ 이상 연구개발 : 2백만\$ 이상
조세 감면	○제조업 : 1천만\$ 이상 ○물류업 : 5백만\$ 이상	○제조업 : 1천만\$ 이상 ○물류업 : 5백만\$ 이상	○제조업 : 1천만\$ 이상 ○물류업 : 5백만\$ 이상	○입주자격과 동일
조세 감면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 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5~15년 (조례 : 최고 15년 100%)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5~15년	○법인세, 소득세 : 7년 (5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5~15년
관세 부과등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부지가액 10/1,000수준	○부지가액 10/1,000이상
임대료 감면	○고도기술 : 100% (1백만불 이상) ○일반제조 : 100%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 100% (1백만\$ 이상) ○일반제조 : 75% (5백만\$ 이상)	○100% 감면
지원 분담	○지정단계에서 부지 매입분담비율 결정 (국비 최대 75%)		○수도권 : 국비 40% ○비수도권 : 국비 75%	
행정 지원	○출장소 설치 - 관세·조세의 부과·징수, 출입국관리 -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 제3절 종합보세구역

### 1.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Zone)의 개요

#### 1) 도입 배경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킴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IMF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 국내 금융시장 개방, 수출 증대, M&A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해외자본 유치와 국내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부터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등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이 시행 중이었는데,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제도가 도입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로의 도약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보세구역의 시행이 검토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공·항만 개발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종합보세구역 제도가 강구되었다.

#### 2) 도입 목적

종합보세구역제도의 도입 목적은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에 기여함에 있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은 복수의 기능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고 제조 및 물류기능을 일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물류의 효율성 극대화 및 수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3) 종합보세구역의 형태 및 특징

종합보세구역 도입의 취지는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관인 관세청에서는 기능별로 '수출 부가가치 창출형' 모델, '물류중계기지형' 모델, '전시·판매형' 모델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sup>50)</sup>

#### 가. '수출부가가치 창출형' 모델

수출부가가치 창출형 수요모델은 창고와 가공시설을 함께 두어 외국물품을 구역 내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서 공·항만 지역 또는 배후의 동종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에 지정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다. 부산 감천항의 일부 수산물 취급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 나. '물류중계기지형' 모델

외국 대형 물류회사의 유치 또는 특정물품의 지역 분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로서 부산, 광양 등에 LME 창고를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한 예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등에 비하여 종합보세구역이 유치 및 운영에 있어 특별히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다. '전시·판매형' 모델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형태의 모델로서 한국에는 아직 실례가 없으나, 일본, 중국에서는 운영 중이다. 종합보세구역의 목적인 물류 및 수출 촉진 등과 상치되는 개념의 모델로서 관련업체(면세점, 시중 수입상)와의 마찰, 소비심리 조장 등의 비판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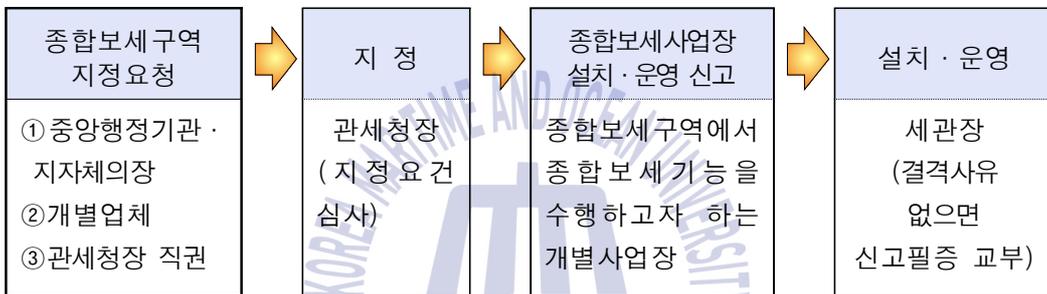
50) 종합보세구역 기능별 3가지 형태 수요모델 : 관세청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4.4.30. 관세청에 제출한 "다기능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관세청에서 계속 사용 중임.

##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현황

### 1) 지정 절차

종합보세구역은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별업체, 관세청이 지정 요청하면 관세청장이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지정한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장이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한다.

<그림 12> 종합보세구역 지정절차



### 2) 지정 요건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의 표와 같고, 점차적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표 15>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

구분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 불 이상</li> <li>· 수출금액 연간 미화 1천만 불 이상</li> <li>·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천 톤 이상</li> </ul>
개별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li> <li>·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 불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li> <li>· 위 자본금 또는 수출금액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통관을 위한 일시장치 기능과 보관·재포장·분배 등 국제물류 촉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li> </ul>

2) 지정 현황

2004.1월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종합보세구역은 35개 구역에 70개 업체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울산, 여수 등 화학제품 업체), 수산물 등 냉동 냉장화물(부산 감천항), LME(비철금속 보관) 화물 등의 보관업체와 제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4년 종합보세구역 반입량은 1,307만톤으로 전체 보세구역 반입물동량(58,527만톤)의 2% 수준으로, 탱크터미널의 석유제품(77%), 냉동육·수산물(11%), LME(5%), 기타(7%) 순이다.

< 표 16>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14.1.1)

구분	지정 현황	계
지역	감천항국제수산물센터, 울산지방산업단지, 전의지방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7(42)
개별업체	국보청학, 은산컨테이너터미널(녹산), 영진공사, 은산컨테이너터미널(화전), 인천북항다목적부두, 태남신항만물류센터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에너지넷, 동북화학 STX탱크터미널,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정일스틸트헤븐울산, 현대오일터미널,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 세동에너지탱크 한국보팍터미널,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에스피탱크터미널, 여수탱크터미널, 남해화학, 현대중공업(주), 대한항공(주)김해공장,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온산탱크터미널(주) 부산탱크터미널(주), ㈜모든 서평택탱크터미널,	28
합계		35(70)

### 3. 종합보세구역의 혜택

종합보세구역은 기존 특허보세구역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특허보세구역은 단일한 기능만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었던 것에 반하여,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전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때 특허를 받아야 하나, 종합보세구역은 설영신고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특허보세구역은 지정시 자본금, 면적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에 비하여 종합보세구역 입주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

셋째, 종합보세구역은 설영·장치의 기한 제한이 없고, 동일 보세사업장내에서의 물품이동 신고를 생략하고 있으며, 또한 특허 신청수수료 및 분기별 특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시 세관신고 의무를 특정물품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표 17>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구분	특허 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수행기능	보세구역 종류별기능 별도수행	보세구역기능 종합적 수행
지정	지정 절차 없음	관세청장이 지정
설치, 운영 등 절차	세관장의 특허	세관장에게 신고
특허 등 요건	기능별 인적·물적 요건 구비	결격사유 미해당이면 됨
운영 기간	일정기간(10년)	운영기간 제한 없음
장치 기간	기능별 별도 장치기간	장치기간 제한 없음
내국물품 반·출입	세관장에게 신고	환급대상 물품만 신고
구역 내 물품이동	보세구역間 이동시 보세운송	입주업체間 이동시 반·출입 신고
보수 및 작업	승인 또는 허가	신고
관세환급	비환급(보세공장, 판매장 환급)	환급
부가세 영세율	비적용(보세판매장은 적용)	비적용

\* 자료 : 관세청, 2012.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중앙대학교)

#### 4.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종합보세구역은 1999년 시행된 이후 지정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09년-24개, '11년-28개, '13년-35개)에 있어 종합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고 판단되나, 수출 및 물류의 촉진을 위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입주기업들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적고, 외국인투자도 미미하며, 종합보세구역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정도로서<sup>51)</sup> 전반적인 운영부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2년 관세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둘 이상의 종합보세기능 수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세창고 또는 보세공장 등 단일기능으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나 활용성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보세사업장 63개중 44개(70%)가 단순히 보세창고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sup>52)</sup>

또한 지자체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지역별로 선 지정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내 미지정업체가 다수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개별업체별 운영이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종합보세구역 지정만으로 업체간의 연계를 통한 복합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지정요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제도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종합보세구역의 차별성 부족이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유보, 세관행정의 편의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감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sup>53)</sup>

51) 관세청 통계 : 2013년 우리나라 수출실적 5,596불, 종합보세구역 수출실적 116억불(2%)

52) 관세청, 2004. 다기능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3.-15.

53) 관세청, 2012.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중앙대학교), P.20-24.

## 5.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종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활성화, 물류축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역내 물품이동에 있어서 반·출입 신고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시설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세구역은 부과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종합보세구역에 비하여 유리하다.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물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반출입 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소방·전기시설 및 각종 보세화물 관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종합보세구역은 이러한 시설재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역내 시설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추가발생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므로 시설재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보수작업 범위 및 절차에 업체 자율권 보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되나 종합보세구역은 그렇지 못하다. 자유무역지역은 보수작업 승인 및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입주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종합보세구역은 보수작업에 있어서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자유무역지역은 장기간(최대 50년) 국·공유지 무상 임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입주기업에게 주는 반면에 종합보세구역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종합보세구역이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에 의해 신속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나, 자유무역지역은 시도지사 등의 지정요청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므로 복잡하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은 항만은 해수부장관, 공항은 국토부장관, 산업단지 는 산자부장관으로 되어있어 통일된 정책수립 등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18>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법적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목적	자유로운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보장 → 외투유치, 무역진흥, 물류원활	2개 이상의 보세기능 수행 → 외투유치, 물류지원	
위치	산업유통단지, 공항만지역(배후지)등	제한없음	
지정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세청장
	요청권자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별업체
	지정절차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지정	지정요청 → 지정
	관리권자	산자부장관(산업단지), 해수부, 국토부(공항만 및 배후지)	관세청장
	지정지역	13개 지역(공항만6, 산업단지7) -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포항, 인천공항(6) - 마산, 군산, 대동, 동해, 울진, 울산, 김제(7)	35개 지역 (산업단지 등 7개, 개별업체 28개)
운영	입주(설치)	요건충족업체 요청→입주허가(관리권자)	개별업체 설치·운영신고
	입주대상	제조·물류·도매업 및 지원업종	보관·제조·전사·건설·판매업
	운영기간	제한없음(임대기간 : 최대 50년, 연장가능)	제한없음
	장치기간	제한없음. 단, 관세청장 지정지역 3월	제한없음. 단, 관세청 지정 1년 범위
방식	구역내 물품이동	입주업체간 이동 제한없음	입주업체간 이동시 반출입신고
	역외작업	세관장에게 신고	세관장에게 신고
세제지원	관세면제 범위	○과세보류상태 사용·소비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운할유·사무용컴퓨터·건축자재	원재료 과세보류상태 사용
	환급 등 범위	기계·기구·설비·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운할유·사무용컴퓨터·건축자재	수출용원재료, 수출물품 수리·보수재, 보세판매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하는 재화로 간주)	비적용
	내국세	○외투기업에 대해 -국세(법인세, 소득세) : 5년간 감면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 등) : 5~15년 범위내 감면	해당 없음

\* 자료 : 관세청 2004. 다기능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방안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 4장 외국의 유사 경제특구제도

### 제1절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 보세구 등

중국의 보세구역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세관 보세구역과 다른 개념으로 기능 설정과 운영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기능이나 관리측면에서 차별화된 중국만의 특색을 구비한 지역이다. 중국 보세구역은 개방지향형 자유무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무역 발전, 고용확대 등의 촉진을 목표로 지역적 우위요소와 결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sup>54)</sup> 중국의 보세구역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개발을 통해 점차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외자유치의 확대와 경제수익성 등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중국의 보세구역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종합보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9월 상하이 종합보세구가 '상하이 경제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되어 진정한 무역·물류·금융자유화를 시도하고 있으며,<sup>55)</sup> 중국시장의 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54) 이원용·정진섭·이민제, “상해자유무역지역(FTZ)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입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29권 4호, 2014.8, p.151.

55) 이원용·정진섭·이민제, 상계서, 2014. P.152.

## 1. 보세구 제도

### 1) 도입배경

중국은 1978년 개방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1980년도에 '경제특구'제도를 신설하여 외자유치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경제특구는 대외개방의 창구로서 지역 경제성장, 외자유치, 선진기술 도입,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소수의 연안도시에만 제한되어 지역 간 차별 문제 등을 야기하였다.

이에 1984년 경제특구제도를 중국 전체지역의 성장 동인으로 활용하고자 '경제기술개발구'를 주요 공업도시에 설립하였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국내 전체 외국자본의 10% 정도가 이 개발구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경제기술개발구는 제조업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중국기업 및 국제물류업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업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국내외 물류기업이 용이하게 입주하여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특별지역으로 1990년에 새롭게 보세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형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시초로 볼 수 있다.

### 2) 보세구 제도의 특징

보세구는 항만을 포함한 경제특구나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입지한 연안지역에 위치해 있고 중국 보세구역제도의 근간으로 다음의 특징이 있다. 56)

첫째, 보세구는 비관세영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보세구 입주기업의 제품생산 및 건설 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건축자재 등 시설재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종합보세구역과는 다르고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다.57)

56)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연구용역보고서, 2012.8. P.76.

57) 이상훈·이수행·강승우, "한·중지역간 공동자유무역지역 설치 타당성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둘째, 보세구는 일반 보세창고나 보세공장과는 상이한 특별지역으로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 규제 완화, 세제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셋째, 보세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수출입화물 및 특수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에 대해서 세관의 감독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보세구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 3)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세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비관세영역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인센티브, 기업경영과 관련된 비용상의 인센티브, 사업수행과 관련된 절차상의 인센티브, 투자절차상의 인센티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업무상 인센티브

첫째, 일반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상품의 전시, 판매회, 박람회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데 반해 보세구에서는 상시 가능하고, 우리나라 종합보세구역과 같이 화물의 보관기간이 무기한이다. 그리고 농산물, 원재료 등 쿼터제 대상물품의 쿼터제 적용이 제외되고 수출입 허가증이 불필요하는 등 통관절차가 매우 간소하고 편리하다.<sup>58)</sup>

#### 나. 사업경영 범위에 대한 인센티브

보세구 입주기업은 무역업·물류업·생산·가공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업과 외화사용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중국은 무역기능, 물류창고기능, 생산·가공기능 및 금융기능이 동일 보세구 내에서 수행되도록 허용하여 집적지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클러스터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 2005-53, 2005.12. P.33-34

58) 석완정·신한원, “중국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전환에 관한 연구”, 2013. 해양비즈니스 26호, p20

다. 경영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첫째, 보세구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50년간 임대 가능하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획득한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할 경우에 재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40%까지 환급해 준다.<sup>59)</sup>

라. 투자절차상의 인센티브

중국정부는 보세구 내 입주기업을 위한 투자 및 사업수행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키고 있는데, 행정업무는 보세구관리위원회가 처리하지만 보세구 내 시설의 임대, 계약 등의 경영업무는 국영기업이 일괄 처리하고, 건축을 위한 승인서, 기업 설립신청 등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 2. 수출가공구와 보세물류원구 제도

중국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리한 경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이후 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수출가공구를 설치 하였으며, 입주기업은 수출가공업체, 원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수출입관련 운수업체 등 크게 세 종류이다. 2014.1월 기준 총 61개가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 수출자유지역이라 볼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입주기업 설치에 따른 기계설비 등은 관세 면제, 외국 반입 원자재는 관세유보, 국내 반입 원자재는 관세환급 등으로 세제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60)</sup>

보세물류원구는 상하이, 선전 등 동부 연안에 설립한 보세구를 창고, 물류 및 중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물류조형 Free Trade Zone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보세구 내에 설치한 경제특구이다. 입주기업은 법인자격을 보유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총 10개의 보세물류원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전통적 보세

59) 이상훈외 2, 전게서, 2015.12. P.35-37.

60) 심영수·현인규·주염, “한·중 보세구역제도의 비교분석”, 물류학회지 20권(2010.12). 2010. p.39.

저장과 보세물류 기능 외에 국제 중계, 무역, 전시 등 기능 추가되었지만 보세 물류원구 내에서 가공을 할 수 없다.<sup>61)</sup> 우대혜택은 보세구와 비슷하다.

### 3. 보세항구와 종합보세구제도

보세항구는 항구와 상호 연결된 특정구역 내에 설치하여 항구, 물류 및 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특수구역으로 창고물류, 대외무역, 소매판매 및 배송, 국제중계, 검측 및 사후서비스, 상품전시, 연구개발, 가공, 제조, 항구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는 내륙지역에 설립되어 보세구, 수출가공구·물류원구, 보세항구 등의 대부분 기능을 포함하는 보세구이다.

보세항구와 종합보세구는 중국의 보세제도 중에서 정책적인 우대요소가 가장 많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1개의 종합보세구(보세항구) 내에 모든 세관특수감관 지역의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보세구는 자유무역구라는 경제특구형태로의 전환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표 19> 중국 보세구역 기능 비교표

기능구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보세창고	○	×	○	○	○
보세가공	○	○	×	○	○
보세물류	×	×	○	○	○
보관기간	×	×	○	○	○
항구작업	×	×	×	○	○

\* 자료 : 심영수·현인규·주염, “한·중 보세구역제도의 비교분석

61) 석완정·신한원, 전게서, 2013. P.25

#### 4. 상하이 경제자유무역구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획기적 경제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이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과 아직도 남아있는 정부의 간섭 등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중국은 2013.9월 최대 경제특구인 상하이 종합보세구를 '상하이경제자유무역시범구'로 지정하여 중국 경제가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개혁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금융과 무역 및 물류의 발전, 세수확보, 인민폐의 국제화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상하이경제자유무역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sup>62)</sup>에 의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첫째, 컨테이너물동량 세계 1위의 상해항, 세계 3위의 포동국제공항 등 유리한 산업의 기초 인프라 및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조세감면, 행정규제 간소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반폐쇄적인 다른 보세구와는 달리 무역, 물류, 금융, 관광 등 각종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되어 있다.

넷째, 투자절차의 간소화이다. 외국인 투자의 입지선정,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센터 등을 통한 적극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62) 김시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9년, P.44-55.

## 5. 중국과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중국 보세구제도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하여 무역 개방성 정도, 기능 확장, 관리체계 등은 제약이 좀 더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소비세 등 조세 감면, 임대료 지원, 화물 보관기간 무제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여타 부분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행정이나 정책상 큰 차이점이나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위의 상하이경제자유무역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종합보세구의 일부를 실제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잘 발달된 유리한 항만·공항 등 산업 인프라를 활용 및 지속 개발하고, 13억 거대인구를 가진 넓은 시장여건 및 풍부한 노동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중 지원 등을 토대로 전면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제 약화 및 간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물류 및 무역 중심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적신호로서 중국의 경제 및 자유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다.

## 제2절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 1. 개 요

싱가포르는 1969년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Free Trade Zones Act)을 제정하고 공항·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하였다. 자유무역지역법은 관세법(Customs Act)의 특별법 형태로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sup>63)</sup>

싱가포르는 케펠(Keppel FTZ),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FTZ), 쎬바왕(Sembawang FTZ), 주롱(Jurong FTZ) 등 4개의 항만 자유무역지역과 창이공항(Changi Airport) 자유무역지역 등 총 5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지역으로서 공·항만에 위치하며 울타리에 의하여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 하여 운영한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최소한의 절차로 저장, 판매, 전시, 분리, 재포장, 조립, 분배, 분류, 등급부여, 반출, 소각이 가능하다<sup>64)</sup>.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아시아권의 관문 역할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물류 중심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천여개의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고,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2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포춘지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 중 21개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가 유치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가 총투자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지역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제물류, 투자, 금융 등 지원 산업을 발전시켰다.

63)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지 08-03, 2008.9. P.56-59.

64) 관세청, “해외 자유무역지역제도 운영사례”, 해외 출장보고서, 2012. P.3~10.

## 2. 지정 및 운영현황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정부 또는 100% 민간기업인 싱가포르항만공사가 운영한다.

<표 20>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관리운영체계

구분	업무내용
재무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고시</li> <li>- 자유무역지역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제정</li> <li>- 관리운영기관 지정</li> </ul>
관리운영기관 (정부 또는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 출입허가 및 통제, 역내 제반활동 수행에 필요한 시설제공과 유지</li> <li>- 울타리 설치, 역내 건축물의 건설허가, 세관검사소 등의 시설 제공, 운송용구선박물품의 반출입을 위한 운영 규정 작성등의 업무 수행</li> <li>- 매년 자유무역지역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수입 및 지출 내역, 기타 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연차 및 회계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li> </ul> <p>○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항만공사(PSA, 100% 민간회사) : 케펠, 파시르 판장, 쉘마왕</li> <li>- 주룽도시공사(JTC) : 주룽</li> <li>- 싱가포르항공청(CAAS) : 창이공항</li> </ul>
세관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상황을 총괄 관리</li> <li>-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상황과 과세를 관리하며, 역내 물품의 사용, 소비, 제조, 소매거래 등에 관한 허가업무를 담당</li> <li>-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또는 제조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평가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세관원을 파견하고 역내외 관세업무를 총괄</li> </ul>
입주업체	<p>무역업자, 화주, 운송인, 포워드, 설영인 등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중심형이기때문에 입주업체는 주로 물류기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반출입, 소각, 보관, 판매, 전시, 분리, 재포장, 조립, 분배, 분류 등 물류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 가능</li> </ul> <p>* 제조 활동은 관리운영기관, 세관당국의 허가 사항</p>

\* 자료 : 관세청, “해외 자유무역지역제도 운영사례”, 해외 출장보고서, 2012.

### 3. 특징 및 주요 인센티브

#### 1)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특징 : 물류중심형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중심형으로써 관리운영기관이 물류센터를 관리한다. 소량화물의 혼재, 분리, 보관, 지역별 배송, 물류 관리, 화물검사, 재하인(remarking), 컨테이너 재적입, 봉인 등의 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FTZ 물류센터는 항만 및 공항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운관련 업체로부터 항공 및 육상운송업체, 창고·포워드 물류업체, 무역업체 등 글로벌기업의 물류센터, 지역본부 등으로 활용된다.

#### 2) 주요 인센티브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자국의 고용증진, 생산 증가, 부가가치 창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첨단 정보·기술업체,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

<표 21>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의 우대혜택

구분	내용
조세감면	경제확장촉진법,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일정수준의 조세를 감면
법인세 감면	선도기업(5~10년간), 사후선도기업(5년간) 면제
투자공제	신규 투자기업은 50%까지 법인세 면제, 확장 투자의 경우 미화 10만 달러 이상시 추가이익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운영본부 설치 기업 우대	50만 달러 이상 자본금의 운영본부(글로벌기업 본부)는 10년까지 소득의 10% 우대세율 적용

\* 자료 : 관세청, “해외 자유무역지역제도 운영사례”, 해외 출장보고서, 2012.

#### 4.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비교

싱가포르는 국토가 서울시보다 조금 큰 정도로 협소하여 임대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며, 국내소비가 작고 고임금,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기능이 중심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싱가포르의 지리적 잇점을 이용한 항만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같이 별도로 조세감면, 임대료 면제 등 우월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투자의 인센티브에 비해 내국인투자에 대한 역차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세제시스템, 간소화된 행정규제 등을 내국인과 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서 차별없이 적용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인 싱가포르항의 주요 특성 및 장점인 최상의 환적시스템 활성화에 부단히 노력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 환적화물은 최소한의 절차로 환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장치료, 하역료, 핸들링 비용 등을 일반화물보다 우대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최신 항만시설 및 선진화된 항만관리·운영기술로 이용자의 편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정부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노력을 하여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최대 장점인 세계 최고의 환적중심 무역항인 싱가포르항의 고도화된 항만처리시스템과 정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항만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외에도 금융, 첨단 IT산업 등의 글로벌기업도 유치하여 복합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의 진행 중인 점이 우리나라와 차별된다.

## 제3절 대만의 자유무역지역 - 수출가공구

### 1. 개요

대만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수출 증대, 외화 획득, 국제수지 개선,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66년 제조업 위주의 수출가공구를 까오슝에 설치하였고, 까오슝 수출가공구가 2년 만에 80개 업체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1969년 난쯔와 타이중에 수출가공구를 추가 건설하였고, 1997년 이후 제조·운송·금융·미디어 및 통신을 포함하는 종합무역지역으로 구조전환을 추진하여 현재 10개의 수출가공구가 운영되고 있다. <sup>65)</sup>

구조전환의 이유로는 첫째, 인건비, 토지가격 등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대만을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시키려는 '아태운영중심(亞太運營中心)'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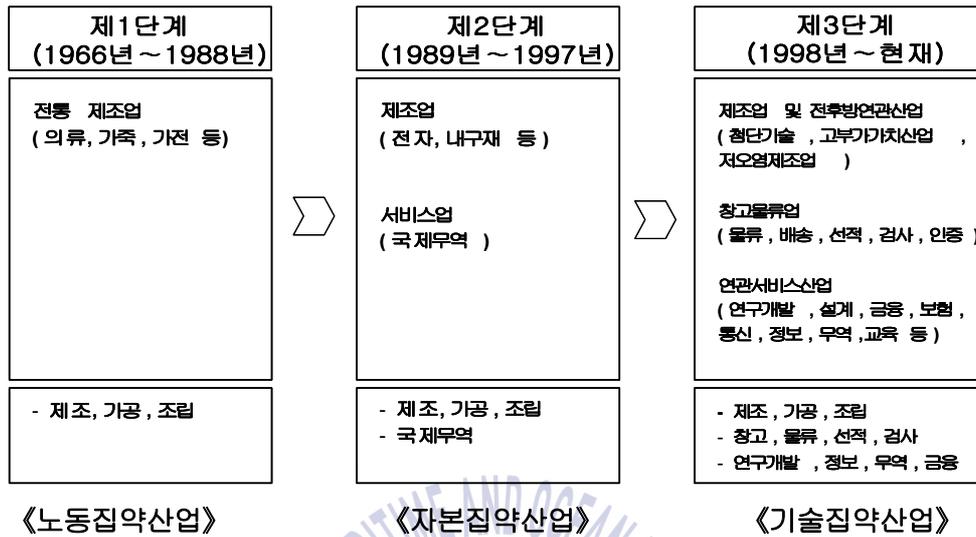
수출가공구는 국제무역의 촉진, 외국인투자 유치의 확대,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취업 기회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입의 자유화와 각종 수속절차의 간소화 및 수입관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가공구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관세자유지역(Duty-free Zone), 산업단지(Industrial Park)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 수출가공구 발전 현황

약 40년의 역사를 가진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구가 물류기능에 중점을 둔 수출가공구로 확대 개편되면서,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교역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65)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전게서, 2008.9, P.51-56.

<그림 13> 대만 수출가공구의 발전과정



대만의 수출가공구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98년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구의 성격을 물류활동에 초점을 둔 창고환적특별구(WTZ)로 전환이다.

창고환적특별구는 제조업의 생산, 가공, 조립 등 기존의 수출가공구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창고, 운수, 하역, 환적, 물류 서비스업 등 물류기능을 강화시키고 이 둘을 결합한 복합형 수출가공구로 전환한 것이다. 즉 내륙운송, 해운, 공운 등을 결합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와 창구 단일화를 통해 제조, 물류, 분할 선적, 가공, 조립, 검사, 상표부착, 포장, 출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출가공구가 개발도상국이 부분적 개방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가 가속되면서 본래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율 하락, 노동력 부족, 대만 달러 절상, 수출가공구의 우대정책 차이 축소, 국제경쟁격화 등으로 수출가공구의 비교우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sup>66)</sup>

66) 관세청, “해의 자유무역지역제도 운영사례”, 해외 출장보고서, 2012. P.18~23.

### 3. 수출가공구 지정 및 관리운영체계

대만 수출가공구는 국가기관에서 운영 및 모든 관리를 하는 특징이 있고, 관리주체인 수출가공구 관리국은 초창기의 ‘관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위해 행정서비스 강화 및 투자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 수출가공구 지정 및 운영기관

구분	구성 및 기관	업무
행정원	경제부, 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장	수출가공구의 설치 및 경영감독권 ⇒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
경제부	경제부	수출가공구의 사업, 위치, 면적 등을 결정 수출가공구 관리처 업무관리
수출가공구 관리처	경제부 산하기관임	수출가공구의 기획, 투자, 인력관리, 건축 물 건설, 보세창고 설립 및 운영 등의 업 무를 제공·처리
세관		수출가공구의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담 당하고, 화물량 및 금액을 검사하며, 물품 의 폐기, 반출입, 보관, 판매 허가

### 4. 수출가공구 입주시 주요 인센티브

주요 인센티브는 조세혜택과 행정절차의 편의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출가공구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임대료 혜택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5년 면세 및 수출가공구 내 신축 공장 취득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각종 설비, 원료, 연료, 자재, 반제품 등의 수입관세 감면,
- 화물세, 계약세, 상품세 등이 면제되고, 영업세 영세율 적용,
-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토지 제공 등

행정 편의제공 부분은 투자관련 일체의 신청 수속과 공장설립, 회사등록, 수출 입허가 등 제반 운영관련 사항은 해당 수출가공구 관리처에서 일괄 대리 처리 해주며, 별도로 주관 정부부처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5.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의 비교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제도로써 1970년 수출자유지역 설치의 모태가 되는 제도이다. 수출가공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제공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유무역제도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역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여러 경제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만은 수출가공구를 세계무역환경 및 경제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아태운영중심계획(亞太運營中心計劃)을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수출가공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수출가공구의 산업구조를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중심에서 탈피하여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여 까오슝항 및 타이중항의 수출가공구에서 가공, 조립, 포장, 환적 등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산업단지형 또는 공항·항만형으로 기능이 구분되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달리 항만물류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지역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지확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일부지가 아닌 분산된 수 개의 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운용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 제4절 홍콩의 자유무역지역 - 자유항

### 1. 자유항 도입 배경

홍콩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항으로서, 중세 지중해 자유항 도시(Free Port City)와 같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항만도시국가 형태를 취하면서 항만 및 전 지역을 비관세지역으로 설정하고, 화물의 장치, 가공·제조는 물론 개인의 거주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해 주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의 중심도시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유일한 자유항이다.

홍콩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은 아편전쟁의 승리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 초대 총독이 된 포팅거가 “홍콩은 자유항(Free Port)으로 모든 선박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1842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67)

홍콩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은 영국의 중상주의와 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사조를 배경으로 한다. 영국은 인도의 섬유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역으로 중국에서 도자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 홍콩 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콩이 지리적으로 동남아의 입구인 동시에 동북아와 동남아의 지리적 교충지라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 홍콩을 자유항으로 육성하게 되었다.(길광수, 1999, P.32)

### 2. 홍콩 자유항의 특징

홍콩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만 중 하나로 세계적인 중계무역 중심지이며 국제 물류·유통의 거점항이다. 홍콩이 물류·유통의 거점항으로 지위를 가지고 배경으로는 ①개방경제, 자유무역 및 자유기업활동 보장정책 ②세계 유일의 민간

67) 장계,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 논문, 2007. P.28-30.

소유·관리 항만 체계 ③생산 및 소비 배후단지로서의 중국 남부 인접 ④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진 항구 ⑤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지 ⑥공·항만의 인프라 시설 발달 ⑦수출입)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세관 절차 ⑧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⑨홍콩자유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인식 정착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뽑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점으로 뽑는 것은 수출입 및 환적 절차에서의 간소화이다. 홍콩의 경우 세계 유일의 자유항으로서 일반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세관 절차는 사실상 전무하고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과세물품·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과 공공보건 등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감시 및 관리하고 있다.

또 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중심의 공·항만 관리, 운영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콩항은 민간기업이 개발과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정부는 항만 개발시 참여회사와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관여한다. 이에 따라 최신 터미널 운영시스템 및 철저한 노무관리로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 3. 홍콩 자유항의 주요 인센티브

홍콩 자유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요소 중 조세상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콩의 조세정책은 기본법(Basic Law)에 의거, 낮고 단순한 세율, 한정된 세목, 광범위한 공제, 소득발생지 원칙, 납세자에게 선택권 부여 등과 같은 조세상의 인센티브가 많이 있다.

관세는 없으며, 과세물품조례에 의거 4개 품목(주류, 담배, 메틸알콜, 석유)에 대해서만 물품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세는 16%,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부여하며,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조세 이외의 인센티브 등을 보면, 첫째, 지리적 여건의 잇점을 들 수 있다. 홍콩은 생산과 소비를 위한 배후지역(중국 광둥성)과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어 물류·유통·가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1842년 초대 총독의 자유항 선언 이후 경제 불간섭주의가 100여년이 넘는 동안 지켜져 왔다.

셋째,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공·항만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4개 민간회사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으며, 항만공사 및 항만노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민간 중심의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복수의 민간회사에 의해 공·항만의 운영이 이루어짐으로써 저비용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의 비교

홍콩항은 천혜의 지리적 조건 및 정책에 따른 해운·물류 거점으로 시작하여 발전한 자유항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비하여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고 경쟁력이 높다.

낮고 단순한 조세정책, 천혜의 지리적 환경조건, 통신 및 교통 등 우월한 인프라, 민간중심의 항만운영 등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윈스톱 행정지원체계를 통해 국제 물류, 투자, 금융 등 지원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구축하여, 민간 주도로 항구도시가 운영되고 있다.

화물관리 측면에서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생략하지만 마약, 총기류, 축산물 밀수 등 사회안전 및 공공보건 등과 관련한 세관감시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무역 원활화와 단속업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와 제도적인 바탕위에 내·외국인 투자 동등혜택 원칙으로 투자 유치기구로서 재무부와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이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금융, 물류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제 5장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문제점

#### 1.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1)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미흡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무역자유화가 심화되면서 국가 및 지역간 글로벌기업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해외이탈의 방지 여부가 각국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간주하여 주요 경제권의 공·항만으로 생산, 물류거점을 재배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경제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항만을 가진 국가들은 유수의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자유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과거 수출자유지역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수출입실적이 2008년 81억불에서 2013년 22억불로 급감하는 등 악화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철수하거나 소유 지분을 줄이는 등 활기가 예전만 못하다. 최근 지정된 나머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도 국내기업만이 참여하거나 외국인 투자도 소규모 합작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신항 및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화물 보관형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세제지원 관련 각종 인센티브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중국, 대만 등에 비하여 우위에 있지 못하거나 차별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후감면시스템, 투자지역간의 세제지원 형평성 등 조세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낮은 경제자유지수

외국인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무역 규모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제자유지수(IEF : Index of Economic Freedom)<sup>68)</sup>를 들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정부규제나 투자에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금융·무역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노동·통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표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발표된 2015년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홍콩은 1위, 싱가포르는 2위임에 반하여 한국은 전 세계 154개국 중 29위로 낮게 나타났다.<sup>69)</sup> 특히 노동항목은 134위의 최하위권으로 전체 순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 유연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불안정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외국에서 부정적으로

68) IEF: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제환경, 사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경제자유지표임

69) 한국경제신문,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 ... 홍콩 1위”. 2015.2.12.

평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 3) 경제자유구역 등과의 차별화 부족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외국인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행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 타 경제특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광범위한 경제특구로서, 물류·서비스 등 산업기능과 주거·의료·교육 등 도시기능을 가지는 특별 행정구역이고,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물류, 무역활동에 초점을 둔 산업특구라는 점에서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주요 목적으로 유사한 세제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서로 유치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설정된 지역 역시 다소 중복되거나 인접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유사성이 강한 두 제도가 서로 양립하여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 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 및 인력 자원의 소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2.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 1)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리주체 상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장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실제적인 관리기관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방해양수산청, 해당지역항만공사, 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등으로 상이(相異)하다. 업무 측면에서는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의 주요업무는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공공성이 중시되지 않거나 상업성이 중시되는 일반 관리업무는 항만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공항공사 등 공동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즉, 관리주체와 관리조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sup>70)</sup>

### 2) 특별(광역)시·도지사의 제한적 역할 수행

또 다른 문제점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자임과 동시에 인센티브 부여 주체인 특별(광역)시·도지사에게 해당지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영향력이 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개발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요청자로서의 역할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근 경제자유구역과의 상생 협력,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0) 변재용,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2002. P.57 ; 김현덕,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1. P.534.

### 3.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1) 일부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화물 등의 장치기간 제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외국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런데 공·항만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화물 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부산항·인천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인 3개월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반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화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아울러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 2)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혜택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은 갖추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FTZ법에 따른 비관세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되어 사용·소비되는 외국물품은 관세등이 당연히 면제되고 내국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등을 환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는 FTZ법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해 관세등을 면제하지만, 국내 시설재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내국물품에 대한 역차별이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이 내국물품보다 외국물품 사용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3) FTA 협정의 적용 예외에 대한 문제

외국에서 원재료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이를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되는 시점에 관세가 부과된다.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관세법과 각종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FTA 등 협정세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FTA협정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FTA협정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FTA협정문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 수입건별로 해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 FTA협정에는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한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관 0084, 2007.12.31)을 근거로,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FTA협정국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으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협정세율(APTA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면서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역내에서 FTA협정국에서 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자국물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상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규상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71)</sup>

71)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지 08-03호, 2008.9. p.35-39.

하지만 이는 국가간의 관세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FTA의 기본 취지와 자유무역지역의 특수한 제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목적을 퇴색하게 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룡·신용준(2010.8)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판매)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 물품에 대해 각종 FTA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경우, 마산자유지역 설문조사 응답 업체의 63%인 33개사가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72)</sup> 라는 연구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4)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초로 미국, EU 등 현재 50여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도 FTA가 타결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FTA가 진행되고 세계가 개방경제화로 나아가면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FTA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출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입에서는 내국물품화된 수입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원산지와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확인, 원산지 발급기관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많은 사항을 산업자원통상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72) 김동룡·신용준, “FTA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 제상학 제25권 제4호, 2010.12. P.286.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아세안 FTA 등 다른 FTA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FTA 협정국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불편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 제2절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개선방안

### 1.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인센티브의 개선

##### 가.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의 도입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을 보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기 위함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지원 방식이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기간에 걸친 사후감면이기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투자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조세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사업시작일부터 5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므로 최장 10년 이내에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야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기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파산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후 세제감면 방식은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동일한 인센티브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전적 세제지원제도를 제안한다.

예를 들면 총 투자비용의 10~20% 정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사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즉 향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할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분을 미리 인정하여 현재 시점에서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감면액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제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총량제 도입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정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기업에 따라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자금액 기준의 세제혜택으로서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도 적은 실정이다.

이에 일괄적 투자지원이 아닌 고용 창출과 중점 육성사업 기술력 중심의 투자유치 필요성 평가에 따라 지원내역을 차등하는 '인센티브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인센티브총량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하나로 총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 총량을 정한 다음 일정비율로 배분하고, 고용 창출,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인센티브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인센티브총량제는 '유입'되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보다는 고용 촉진, 지역개발 효과 등이 큰 외국인 투자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인센티브 지원 정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육성산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유연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상력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다. 내·외국인 투자의 조세감면 형평성 개선

국내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인센티브가 내국인 투자에 비하여 훨씬 크다. 투자지역 유형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세제지원을 하는 곳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외투기업에만 세제지원을 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동 지역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역차별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73)</sup>

최근에는 한국기업들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의 글로벌기업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술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계적 선도 기술을 보유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해 있어 외국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국내투자유치도 국가 경제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해외 소재 한국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동등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하였다가 국내에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즉 외국인직접투자자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자유무역지역 제도에서 보듯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73) 김재호·윤현석,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4권, 2014.9.P.1201.

## 2) 경제자유지수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안정화 노력

경제자유지수는 한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표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평가대상인 전세계 154개 국가 중 29위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쟁상대 중 하나인 홍콩은 1위로 발표되었다.<sup>74)</sup> 일반적으로 정부규제가 많고, 부정부패 지수와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가 낮아진다. 또 기업들의 근로자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사분규가 많을수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을수록,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는 하락한다. 한국은 기업·정부개입·금융항목에서 세계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무역과 노동항목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노동부문은 134위의 최하위권으로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노동력을 쉽게 채용하고 정리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불안정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과 외투기업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노동쟁의 등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측면에서는 경영구조와 노사문화 등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관련법의 완화, 법적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의 대체,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노동시장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74) 한국경제신문,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 ... 홍콩 1위”. 2015.2.12.

또한 노사협의회의, 노사조정중재기구의 설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행정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노사의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가 구축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 3) 자유무역관련 경제특구 제도의 점진적 통합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의 진흥 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가지 경제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들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 제도들의 특성을 간단히 보면,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 또는 내륙지역 특정 장소에 일정한 면적의 구획을 정하여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비관세지역으로, 역내 자유로운 물류흐름,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경제특구이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선진기술 이전, 고용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형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한 소규모 산업단지이다. 이 두 제도는 역내에 외국인 등 민간인의 거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무역, 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금융·의료·교육 등 각종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이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하여 가장 광범

위한 지역으로,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거나 인접해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주관부서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점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단기적으로는 두 제도를 별개의 제도로 존속시키면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 전략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통합방안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물류중심형 특구'와 '생산단지형 특구'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상하이에 시행중인 '상하이경제자유무역시범구'에 보세구나 다른 경제특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이때 자유무역지역이 비관세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타 지역과 구분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이 충분한 물품재고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내부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가 없는 자유무역지역 운영도 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특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R&D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단지 특구와 금융·국제컨벤션센터·서비스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특구 등의 설치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은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다른 제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각자 특성화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성화된 지역에 주는 각종 인센티브는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sup>75)</sup>

---

75) 장개, 전개서, 2007.

## 2. 관리·운영측면에서의 개선방안

### 1) 자유무역지역 관리 전담기관 설치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주체와 관리조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관리권자 전담기관의 설치를 제안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국제물류기능을 관리·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행정지원시스템을 수행, 즉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업무지원,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편의 및 경영상 애로사항 지원, 통제시설의 유지관리, 마케팅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전담기관의 기관장은 공무원(전직공무원)을 배제하고 투자유치 전문가 위주로 영입하고, 전담기관의 직원이나 자문단도 이론적 맥락의 지식을 겸비한 학계 및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각 자유무역지역별 관리권자의 상이에서 오는 행정상 혼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전담기관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에서부터 운영까지 개별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76)</sup> 홍콩의 공·항만 및 싱가포르의 항만 운영이 100%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 창의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여 행정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행정지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참고하여 활용할 만하다.

---

76) 김시환, 전게서, 2009. p.85-87.

## 2) 시·도지사에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 부여

FTZ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정요청자이다.

그런데 같은 지정요청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는 달리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sup>77)</sup> 따라서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발전을 위해 개발계획 및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관리권은 해당 관리권자에게 이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공유재산인 토지 등을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매각 가능하고, 그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매각대금이 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중국 등 해외의 운영사례를 보면, 자유무역지역의 투자유치 및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시·도지사가 관리권한이 없이 보조적이고 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해당 자유무역지역이 소재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 및 개발계획 수립자이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체인 시·도지사에게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7) FTZ법 제5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리권자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 그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으나, 관리권자인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 3. 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

#### 1) 수입화물 등 장치기간 제한의 폐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외국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항 또는 항만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화물 장치기간 및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FTZ법 제37조)

즉 아래 지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현행 3개월)을 준용하여 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규정에 따라 강제매각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입신고수리물품의 경우에는 15일내 관세영역내로 반출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 · 항만	적 용 지 역
부 산 항	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 부산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BNCT터미널
인 천 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 천 공 항	화물터미널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장치기간을 한정하는 이유는 관세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보세구역 장치장소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조세채권의 우선적 확보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고, 최근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길어지거나 종합보세구역과 같이 장치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장치기간 제한의 문제는 화주(이용자)와 운영인에 따라 입장이 다른데, 화주는 물품의 보관기간이 제한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에 대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이 약한 것을 선호하고,

운영인은 화물의 반입량이 많을 때에는 유통주기가 빠를수록 영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므로 가급적 장치기간이 짧은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한편 최근 물류업은 제3자 물류(TPL : Third Party Logistics)<sup>78)</sup>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중 하나인 국제물류의 원활화도 이러한 전문적인 글로벌 물류업체의 유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치기간의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해 반출 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장치 화물의 회전율을 높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기간시설인 항만의 효율성 향상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항만 장치비율이 낮아 화물을 수용할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해 반출의무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항만 장치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수입업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의 경우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장치기간의 제약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자유로운 물류활동의 보장이라는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퇴색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러한 의무나 제한을 폐지함이 타당하다.

---

78) 제3자물류(TPL) : 전문 물류업체가 하주에게 물류개선계획을 제안하여 물류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탁하는 형태로서, 기업은 생산 또는 판매만 담당하고 외부의 전문 물류업체가 판매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물류서비스.

## 2)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동등한 세제혜택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있다. 지정지역은 ① FTZ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②도로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으며, ③물품 반출입 관련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예정지역은 ①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②,③의 요건은 아직 미비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지역은 FTZ법에 따른 비관세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 반입되어 사용·소비되는 외국물품은 당연히 관세등<sup>79)</sup>이 면제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아래 내국물품에 대하여도 FTZ법 제 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의 규정에 의해 관세등을 환급하여 준다.

### ▶ 관세등 환급 내국물품의 범위 (FTZ법 제29조 1항)

1.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2. 원재료·유탄유·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3.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실제로 내국물품은 수입통관 당시 이미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물품이므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관세등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시설재<sup>80)</sup>라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하여 차별이 있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는 FTZ법 제46조(예정지역에서

79) FTZ법에서 관세등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말한다.

80) 시설재의 범위 : ①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설자재  
②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의 관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해 관세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내국물품 시설재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은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sup>81)</sup>

자유무역지역내에 반입하는 시설재는 내·외국물품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관세감면 또는 관세환급등의 혜택을 부여함에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되는 내·외국물품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는 것은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국내물품을 배격하고 인근 대만, 중국 등 외국의 시설·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생산력 증가, 고용 및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시설재의 경우는 세관의 사후관리대상으로 감독을 받기 때문에 관세등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는데, 내국물품 건축자재 등 시설재도 한 번 설치되면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외국물품 시설재와 마찬가지로 내국물품 시설재도 관세등의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사용하는 내국물품 시설재도 외국물품 시설재와 같이 관세등을 환급하는 조항을 「FTZ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81) FTZ법 제3조 제1항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자유무역지역내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은 과거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개념인 수출자유지역에서 확대되어 물류, 무역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경우는 생산물품을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는 동기와 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재수출하려는 동기가 혼재되어 있다.<sup>82)</sup> 그러나 FTA 확대로 자유무역지역의 비관세혜택의 장점이 일부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인투자 동기가 저하되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서 FTA협정국에서 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관세영역 내로 수입될 때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입시점의 물품의 상태와 성질이 FTA체결국에서 운반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의 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영토내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FTA협정의 직접운송원칙에 반하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법률 및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유무역 지역의 특수한 법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FTA협정은 관세선이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구조의 자유무역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원산지기준에 충족하는 수입물품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FTA협정의 기본취지이므로, FTA협정 문언대로만 엄격히 해석하여 원산지기준에 충족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협정세율을 비적용함은 FTA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므로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아니지만,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바로 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82) 한동근외 3, “외국인직접투자자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8. P.40.

둘째, FTZ법에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관세 부과기준을 원재료 수입이 아닌 생산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으로 된 이유는 관세유예 효과를 주기 위함이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FTZ법에는 관세유예의 특혜만 규정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적용세율은 관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동일한 물품이 일반지역에 수입되었을 때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셋째, FTA 협정국에서 반입한 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자유무역지역의 특혜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입주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법상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FTZ법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협정세율을 우선 적용하며, 이때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에 대하여 FTA체결 상대국으로 본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하거나, FTA법에 상기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4)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FTA는 무역자유화와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FTA 체결시 체결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체결전보다 확대되는 무역창출효과와 비체결국에게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비체결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감소하고 체결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즉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어 역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FTA 협정은 회원국 간 관세철폐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환경에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내국물품화된 수입원재료를 사용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FTA에서 중요한 요소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확인, 원산지 발급기관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다.

FTA 회원국 간의 다양한 원산지증명 발급업무들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에 불편 또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에 대한 One-Stop 수출행정 지원을 위해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제외한 기관인증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FTA 체결 또는 개정시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약에 명기함을 제안한다.

<표 23>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정책적 측면	<p>획일적 사후 세제감면시스템, 내·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차별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세계적인 선진 기업은 외국인 투자 유인 효과 있음</li> </ul>	<p>《사전적 세제지원 정책 도입》 대형투자, 첨단기술산업 등 외국인투자 시 법인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사전 감면제도 도입’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 완화</p> <p>《협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총량제 도입》 지자체가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총량을 정한 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인센티브총량제’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시 활용</p> <p>《내·외국인 투자의 조세감면 형평성 개선》 FTZ에 투자하는 국내복귀 내국기업 등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 부여로 조세감면 형평성 개선</p>
	<p>경제자유지수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표로, 한국은 2015년 세계 154개국 중 29위로 발표됨. 특히 노동부문이 134위 최하위권으로 외국인투자 저해 요인</p>	<p>《경제자유지수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안정화》 경제자유지수의 하위권 결정 요인인 노동시장 안정화를 통한 경제자유지수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하고 관련법 등 노동법규 완화, 노동행정 컨설팅서비스 등 시행</li> <li>· 노동쟁의,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 개선 등</li> </ul>
	<p>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타 경제 특구와의 차별성 부족 및 인접 또는 중복 지정으로 외국인투자자 혼란 야기</p>	<p>《자유무역관련 경제특구의 점진적 통합》 유사한 목적의 FTZ, 외국인투자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점진적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는 별개 제도로 존속하면서 유기적 연계운영</li> <li>·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 운영</li> </ul>
관리·운영적 측면	<p>FTZ 지정과 관리주체 상이로 외국인투자 유치 애로 및 체계적인 관리 어려움</p>	<p>《FTZ 관리 전담기관 설치》 FTZ 관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각종행정편의 및 경영상 애로사항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지원, 입주업체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행정편의 제공</li> <li>· 전담기관은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효율성 제고</li> </ul>
	<p>FTZ 지정 요청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권자인 시·도지사에게 FTZ 관리 권한 미부여로 적극적 협조나 역할 기대 애로</p>	<p>《시·도지사에게 FTZ 관리권한 부여》 해당 FTZ가 소재한 지방의 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FTZ 관리권한 부여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능동적 역할 수행 및 효율적인 세제 및 임대료 감면을 관리토록 함</p>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	<p>부산항·인천항 등 일부 FTZ의 화물장치기간 제한(3개월) 및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15일) 지정·운영에 따른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유치 저해 요인 가능성이 있음</p>	<p>《수입화물 등 장치기간 제한 폐지》 FTZ의 화물장치기간,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물류활동 보장 및 글로벌물류기업 투자유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Z는 장치기간 제한 목적 중 하나인 조세채권 확보와 관련이 없음.</li> <li>· 최근 보세구역의 장치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한 폐지 추세임</li> </ul>
	<p>FTZ 예정지역 반입 내국 시설재에 대한 관세 미환급 등 외국시설재와 비교하여 세제감면 역차별로 국내경제 활성화 저해 가능성 있음</p>	<p>《 FTZ예정지역에 반입한 내·외국 시설재에 대한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FTZ예정지역 반입 외국시설재는 관세 면제 및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함에도 내국 시설재는 관세 비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을 미적용함은 역차별로 판단되므로 동등한 세제혜택 부여 법규 신설 필요 ⇒ FTZ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조항에 내국물품 시설재의 관세환급 조항 신설</p>
	<p>FTA 협정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FTZ 내로 반입,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FTA협정세율을 비적용하고 기본세율 적용에 따른 자금부담 문제</p>	<p>《FTZ내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협정세율 적용》 FTA협정국에서 FTZ내로 반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내로 반입시 물품의 상태와 C/O의 물품 상태가 다르기 때문임. 하지만 이는 FTZ의 특수한 법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관세법이나 FTA법을 개정할 필요 * 관세영역내 수입시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관세보류 목적 FTZ내에서 수입시 기본관세 부과는 문제가 있으며, FTZ내 업체의 큰 불만요소임</p>
	<p>대외무역법에 의거 FTZ관리원장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권한이 있음에도, 한·싱가포르 FTA 외에는 C/O를 발급할 수 없어 FTZ 입주기업 불편 및 업무상 비효율성 초래</p>	<p>《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발급 C/O 인정》 외국과의 새로운 FTA 체결하거나 기존에 체결한 FTA의 수정시 FTZ 생산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발급한 C/O를 인정토록 협약에 명기함으로써 원스톱 수출행정 지원</p>

## 제 6 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FTA의 확대에 기인한 경제블록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제적인 국경과 무역장벽이 빠르게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으로 글로벌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도록 저마다의 법규범과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다국적 기업 등 외국인투자 유치 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투자는 투자유치국에 고용창출, 기술도입, 선진 경영기법 전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공항만 또는 내륙지역 특정 장소를 정하여 외국의 영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한 비관세지역으로, 역내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 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특구이다.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법인세·재산세 등 각종 세제를 일정기간 감면해주고 공공부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 인센티브 등 면에서 자유무역지역과 차별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무역·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투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개념 경제특구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 대형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 소규모 산업단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동북아 국가들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경제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하지만 중국만의 특색을 가진 보세구 제도를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와 넓은 시장 여건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수한 항만 인프라 및 행정지원시스템,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모태가 되는 수출가공구 제도를 196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와 항만물류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자유무역 경제특구이다.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온지 벌써 10여년이 흘렀고, 정부에서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일정 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무역지역이 기대만큼 무역 진흥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일률적인 세제지원 혜택과 불확실한 노동시장에 따른 낮은 경제자유지수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관리·운영 면에서는 각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상이하야 외국인투자 유치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자이면서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혜택 부여자인 시·도지사에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일부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장치기간이 제한되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시설재로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차별이 있으며, FTA 협정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으로 생산한 물품을 수입시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후적 세제감면 체계를 향후 발생할 소득의 조세 감면분을 미리 일정부분 인정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원해주는 사전적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일괄적 투자규모 지원 정책을 고용창출과 중점 육성사업 중심의 투자유치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하며, 노동 관련 법제 개선 및 노동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경제자유지수를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각 자유무역지역의 상이한 관리주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하나의 총괄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청자이면서 개발 및 유치계획 수립,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등에 능동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화물 등의 장치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보장하고,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

하는 내국물품 시설택에 대하여도 외국물품 시설택과 동등하게 관세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FTA 협정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FTA협정국에서 반입한 물품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시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FTA법 등의 개정하여야 한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서 자유무역과 외국인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들어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국가 자유무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관련제도의 통합필요성과 통합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FTA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 무한경쟁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내의 실제적인 화물흐름과 물품관리제도의 문제점, 입주 기업체들의 사업운영상의 실질적인 애로 및 개선 요청사항 등 실무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자유무역 관련 제도의 통합 후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상훈,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 이슈&진단(경기개발연구원, 2011.8월호),  
장개, “한국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7.  
지영근,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최낙균 외 2(관세청 용역보고서), “다기능 물류중계기지 육성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4.  
부산본부세관, “HOW TO 자유무역지역”, 2012.6.  
정대철,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확대추세와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0.8.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통계분석 보고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2012.9.  
변재용,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비교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백서 2012」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2.9.  
김재호·윤현석,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4권, 2014.9.  
강영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권, 2011.5.  
김영국,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지, 2013.  
고의현, “경제발전전략으로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제12권 9호, 2014.8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제도 역할 재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2012.9.  
이원용·정진섭·이민제, “상해자유무역지역(FIZ)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29권 4호, 2014.8,  
김군수의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지2012년 67호, 2012.12  
석완정·신한원, “중국보세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전환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  
니스 26호, 2013.12.

심영수·현인규·주엽, “한·중 보세구역제도의 비교분석”, 물류학회지 20권, 2010.12.

이상훈·이수행·강승우, “한·중지역간 공동자유무역지역 설치 타당성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지 2005-53, 2005.12.

김시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9.12.,  
관세청, “해외 자유무역지역제도 운영사례”, 해외 출장보고서, 2012.8.

원종학·마정화·정경화,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관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지 08-03, 2008.9.

김동룡·신용준, “FTA확대에 따른 마산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물품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2010.12.

한동근외 3, “외국인직접투자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8.

김현덕,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5권 제6호, 2011.8.

산업통상부 산업물류투자팀, 자유무역지역 홍보브로셔. 2014.6.

인천신문, “입주기업 없는 자유무역지역 갑론을박”, 2015.3.11.

관세청 보도자료, “무역 1조달러 달성의 견인차, 보세가공 제도”, 2014.1.15.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수출 30%, 보세가공지역에서 이뤄져..”, 2014.1.06.

한국경제신문,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 . . . 홍콩 1위”, 2015.2.1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z.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 홈페이지(<http://fims.kicox.or.kr>)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http://www.ftz.g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bjfez.go.kr>)